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운영규정

Play ON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운영 규정

1장 총칙

1조 (명칭)
본 리그는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라 통칭하며, 초중고 리그별로 공식 후원사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각 급별 세부적인 리그 명칭은 아래와 같다.
① 초등 : 2025 전국 초등 축구리그 및 시도대항전
② 중등 : 2025 전국 중등 축구리그 및 왕중왕전
③ 고등 : 2025 전국 고등 축구리그 및 왕중왕전

2조 (목적)
본 리그는 축구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지덕체를 겸비한 축구 인재 양성, 건전한 학교 스포츠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주최)
본 리그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4조 (주관)
본 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나 권역별 리그는 시도축구협회에 주관을 위임한다.

5조 (후원)
본 리그의 후원사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결정한다.

6조 (참가 대상)
① 본 리그는 2025학년도 현재 국내 초등·중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만 18세 이하의 유·청소년으로 구성된 대한축구협회 등록팀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신규팀의 리그 참가대상 자격은 2025년도 '리그 라이선스 제도' 에 따른다.(부록11-리그 라이선스 제도)
③ 법인 증명 서류(발급일 3개월 내) 제출은 리그 라이선스 신청 시 최초 1회, 필요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및 시도협회는 리그 기간 중 증명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참가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을 유지해야 하며, 해산된 법인으로 참가 중인 모든 팀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7조 (리그 구분)
본 리그는 참가 팀의 학제에 따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구분하며, 리그 단계에 따라 권역 리그와 초등부 시도대항전 및 중·고등부 왕중왕전으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초등부 : 시도대항전 개최
- 중·고등부 : 왕중왕전 개최

8조 (기간)

권역 리그는 2025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시도대항전 및 왕중왕전의 개최 시기는 별도 공지한다.

9조 (장소)

본 리그는 주최 측이 승인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10조 (조직)

본 리그의 운영을 위해 중앙조직위원회와 시도조직위원회를 둔다.

11조 (규정의 승인)

본 리그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은 대한축구협회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2장 중앙조직위원회

1조 (지위)

중앙조직위원회는 본 리그의 운영을 위한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다.

2조 (구성)

① 중앙조직위원회는 리그운영본부(대회운영본부)를 둔다.

② 리그운영본부는 리그사무국을 두고, 대회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정소위원회의 업무협조를 받는다.

3조 (조직도)

위 2조에 따라 중앙조직위원회는 아래 조직도와 같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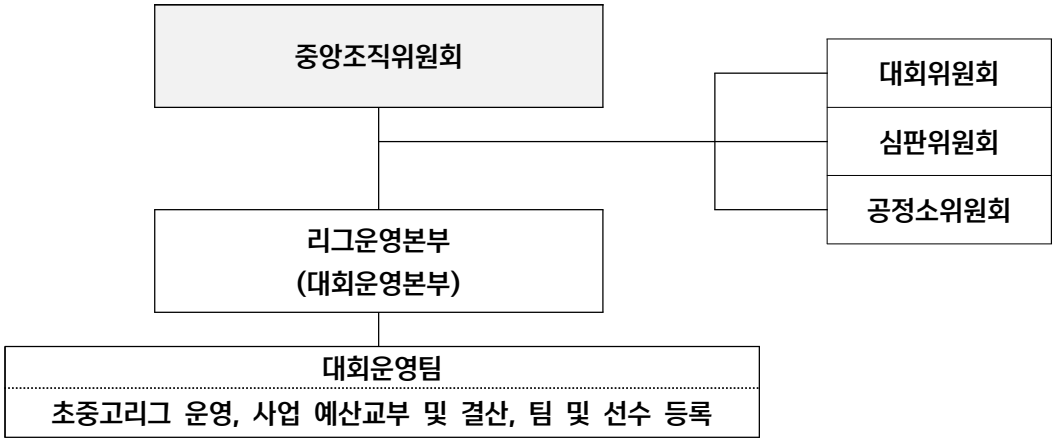

4조 (중앙조직위원회)

① 중앙조직위원회는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 승인할 수 있다.

② 중앙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명망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

⑤ 중앙조직위원회는 전반기 또는 후반기 정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나 3인 이상의 위원 발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중앙조직위원회는 참가팀, 지도자, 임원 및 선수 등의 참가 자격이나 경기 출전 자격 등 각종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성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부회장, 대회위원장, 리그운영본부장, 리그사무국장으로 한다.

5조 (리그운영본부)

① 리그운영본부는 본 리그의 실무 집행 기구로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고,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② 리그운영본부는 본부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리그운영본부장은「대한축구협회 대회운영본부장」이 맡는다.

④ 리그운영위원은「본 리그 중앙조직위원회 리그사무국장, 리그사무국 각 팀장」으로 구성한다.

⑤ 리그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1조 (명칭)

본 리그는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라 통칭하며, 초중고 리그별로 공식 후원사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각 급별 세부적인 리그 명칭은 아래와 같다.

① 초등 : 2025 전국 초등 축구리그 및 시도대항전
② 중등 : 2025 전국 중등 축구리그 및 왕중왕전
③ 고등 : 2025 전국 고등 축구리그 및 왕중왕전

2조 (목적)
본 리그는 축구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지덕체를 겸비한 축구 인재 양성, 건전한 학교 스포츠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주최)
본 리그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4조 (주관)
본 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나 권역별 리그는 시도축구협회에 주관을 위임한다.

5조 (후원)
본 리그의 후원사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결정한다.

6조 (참가 대상)
① 본 리그는 2025학년도 현재 국내 초등·중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만 18세 이하의 유·청소년으로 구성된 대한축구협회 등록팀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신규팀의 리그 참가대상 자격은 2025년도 '리그 라이선스 제도' 에 따른다.(부록11-리그 라이선스 제도)
③ 법인 증명 서류(발급일 3개월 내) 제출은 리그 라이선스 신청 시 최초 1회, 필요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및 시도협회는 리그 기간 중 증명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참가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을 유지해야 하며, 해산된 법인으로 참가 중인 모든 팀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7조 (리그 구분)
본 리그는 참가 팀의 학제에 따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구분하며, 리그 단계에 따라 권역 리그와 초등부 시도대항전 및 중·고등부 왕중왕전으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초등부 : 시도대항전 개최
- 중·고등부 : 왕중왕전 개최

8조 (기간)
권역 리그는 2025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시도대항전 및 왕중왕전의 개최 시기는 별도 공지한다.

9조 (장소)
본 리그는 주최 측이 승인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10조 (조직)
본 리그의 운영을 위해 중앙조직위원회와 시도조직위원회를 둔다.

11조 (규정의 승인)
본 리그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은 대한축구협회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3장 시도조직위원회

1조 (지위)

시도조직위원회는 본 리그의 권역 리그 운영을 담당하는 시도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2조 (구성)

① 시도조직위원회는 시도리그운영본부를 둔다.
② 시도리그운영본부는 리그운영팀을 둔다.
③ 리그운영팀은 경기 운영, 시설 지원, 회계 정산, 홍보마케팅 등의 담당자를 둘 수 있다.

3조 (조직도)

위 2조에 따라 시도조직위원회는 아래 조직도와 같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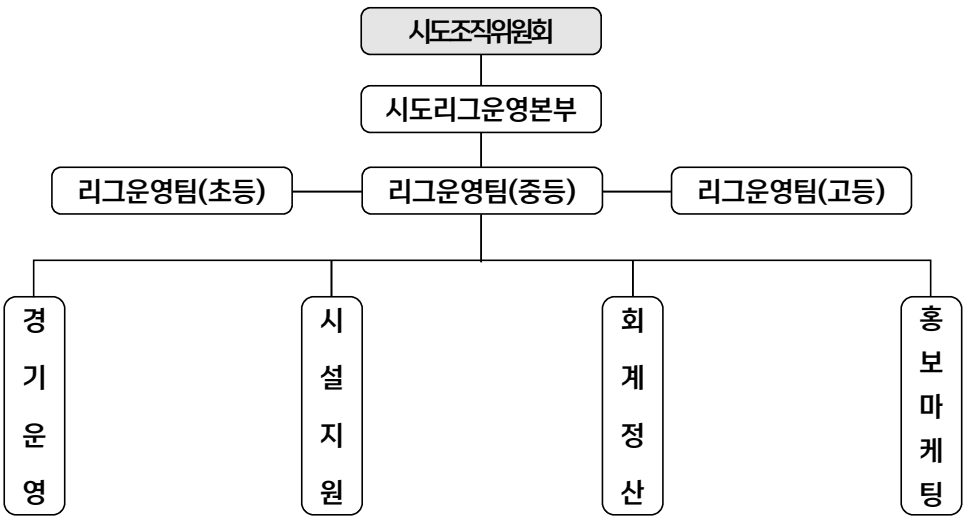

4조 (시도조직위원회)

① 시도조직위원회는 본 리그의 시도 내 최고 의결 기구로서 해당 권역 리그의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여 중앙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시도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도축구협회장이 맡는다.
④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체육 관련 인사, 시도축구협회의 부회장과 전무이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시도조직위원회는 3월과 12월에 정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나 3인 이상의 위원 발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조 (시도리그 운영본부)

① 시도리그 운영본부는 본 리그의 시도 내 실무 집행 기구로서 사업 계획과 경기 일정, 예산안을 수립하고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② 시도리그운영본부는 본부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리그운영본부장은 시도축구협회 부회장 또는 전무이사 중 1인이 담당하며, 해당 시도축구협회가 주관하는 권역리그 전체를 총괄한다.
④ 시도리그 운영위원은 시도축구협회의 전무이사, 경기이사, 심판이사, 시설이사,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⑤ 시도리그운영본부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본 리그의 준비와 운영을 관리한다.
⑥ 시도리그운영본부는 주관하는 권역 리그 경기의 리그운영감독관을 직접 배정한다.

1. 특별한 경우 중앙조직위원회 대회위원회와 리그운영감독관 배정과 관련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경기 당일, 리그운영감독관은 중앙 경기감독관의 활동을 불허한다.(중복 파견 불가)

⑦ 시도리그운영본부는 해당 권역 리그 경기의 심판을 직접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중앙조직위원회 심판위원회와 심판 배정과 관련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6조 (리그운영팀)

① 리그운영팀은 권역 리그의 실무 조직으로서 시도 리그운영본부를 보좌한다.
② 리그운영팀은 리그운영본부장과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 리그운영팀원은 시도축구협회 직원, 리그운영감독관, 지역 내 축구인, 경기 운영 보조요원 등으로 구성하며, 경기 운영, 시설 지원, 회계 정산, 홍보마케팅 업무에 배치된다. 경우에 따라 1명이 두 팀 이상 겸임할 수 있다.

7조 (시도공정소위원회)

① 시도공정소위원회는 주관 권역 리그의 징계를 담당한다.
② 시도공정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2개 시도가 1개의 권역으로 운영하는 경우 주관협회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5인 이하 동수로 구성한다.
③ 시도공정소위원회 간사는 해당 권역리그를 주관하는 시도협회 사무국 직원이 담당한다.
④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의 경우, 중앙조직위원회가 담당한다.
⑤ 징계 확정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징계 당일 KFA 온라인 등록시스템에 징계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⑥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중앙조직위원회 공정소위원회가 결정한다.

4장 예비 팀명 참가 신청

<용어 정의>

□ 등록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팀·선수·지도자·임원이 등록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회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협회가 인정한 경기·대회·리그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예비) 팀명 참가신청

'리그 라이선스'를 득한 팀이 리그 참가를 위해 지정된 기한 내에 팀 참가신청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부절차 및 기간은 별도 안내에 따르며, KFA 온라인 등록시스템(joinkfa.com)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각 급별 리그 참가비를 납부하여 시도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은 팀에 한하여 (예비)팀명 참가신청 완료 팀으로 간주한다.
또한, (예비) 팀명 참가신청 완료한 이후 팀에 사정에 따라 리그를 불참하는 경우, 해당 팀은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팀 및 선수 참가신청

(예비) 팀명 참가신청 완료 후 팀·선수·지도자·임원의 리그 참가신청, 배번 입력, 유니폼 색상 입력 등을 진행하는 각종 절차를 말한다. 참가신청 절차를 완료한 팀에 한하여 본 리그에 출전이 가능하며, 참가팀은 해당 시도협회별로 안내된 기간 내에 급별 최소 인원(초등 10명/중등 16명/고등 18명) 이상의 선수를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선수 참가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팀은 리그 참가 자격을 상실하며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1조 (예비 팀명 참가신청 자격)

① 본 리그 참가를 위해 신청하는 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며, 등록을 완료한 팀
2. 신규 참가 희망팀 및 비활동 팀의 재등록의 경우, 「리그 라이선스 제도」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며 라이선스 승인을 받은 팀

② 리그 도중 팀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법인 변경 등) 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조직위원회를 통하여 대한축구협회의 최종 승인을 득한 팀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팀명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은 해당 팀에서 감수한다.

2조 (예비 팀명 참가 신청 방법)

본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KFA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을 통하여 참가 신청할 수 있다.

3조 (예비 팀명 참가 신청 기간)

팀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정한 참가 신청 기간 중에 참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4조 (리그 참가비의 납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초등 10만 원(분할팀의 경우, 팀당 10만 원), 중등 20만 원, 고등 30만 원의 리그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에 따라 별도의 팀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 및 중앙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장 팀, 선수, 지도자 및 임원의 참가 신청

1조 (팀 및 선수의 참가 신청 자격)

① 팀 및 선수의 리그 참가 신청은 대한축구협회 등록을 필한 팀(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라이선스를 보유한 팀에 한해서 리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2조 (팀 및 선수의 참가 신청 시기)

① 대한축구협회의 등록을 필한 팀은 주최단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에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② 대한축구협회의 등록을 필한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3조 (팀 및 선수의 리그 참가 신청)

① 선수의 리그 경기 출전은 리그 참가신청 한 날로부터 가능하다.
참가팀은 초등 10명 이상, 중등 16명 이상, 고등 18명 이상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리그 참가 신청 시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1번부터 99번까지 가능하며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시도대항전 및 왕중왕전까지 연계 적용한다.

③ 선수는 리그 첫 경기 이후 유니폼 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첫 경기 출전 전에는 유니폼 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예정 경기일의 2일 전까지 시도조직위원회로 공문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4조 (초등부 분할팀의 참가신청)

① 초등부 분할팀의 리그 참가 신청은 참가팀의 공정한 기회부여 및 권역리그 운영 상의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 시도협회와 대한축구협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리그 참가신청 조건 및 이동

필수 조건	팀 간 선수 이동
- 등록선수 20명 이상 - 6학년 선수 16명 이상 - 분할팀당 6학년 선수 최소 8명 이상 포함 - 분할팀은 최대 2팀만 가능	- 분할팀간 이동은 등록기간내 최대 2회에 한하여 가능 - 1회당 최대 3명 이동 가능(연간 최대 6명) - 분할팀 내(2팀) 중복 등번호 사용 불가

※ 2027년부터는 분할팀당 6학년 선수 최소 10명 이상 포함 예정

③ 한 개의 권역만 있는 지역의 초등부 분할팀의 경우, 협회와 시도협회 협의를 통해 동일 권역 편성이 가능하다.

④ 분할팀명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예: 팀명A-팀명B, 팀명화이트-팀명블랙 등 대비되는 팀명 사용 가능)

⑤ 분할팀 간 선수 이동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팀에서 해당 지역 시도협회로 공문 요청
2. 지역 시도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요청

5조 (이적 선수의 등록 및 참가 신청)

① 이적 선수라 함은 다른 팀으로 그 소속 팀을 변경한 선수를 말한다.

② 이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정기 등록 또는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③ 해체된 팀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있다.

④ 분쟁 조정(대한축구협회 선수위원회 결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 (등록기간 내)으로 등록 및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⑤ 대한축구협회 선수위원회에 분쟁 조정 사항이 접수된 경우, 아래 절차 및 조건에 따라 등록 및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1. 대한축구협회 선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며, 분쟁 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여부 결정

2. 분쟁 조정 신청일이 협회 등록 기간일 경우, 선수위원회에서 등록 승인을 받은 즉시(등록 기간이 아니더라도) 등록 및 참가신청 가능
3. 분쟁 조정 신청일이 협회 등록 기간이 아닐 경우, 선수위원회에서 등록 승인을 받은 이후의 등록 기간에 등록 및 참가신청 가능

⑥ 기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의 등록 규정에 따른다.

6조 (이적 및 유급 선수의 리그 출전 등)

① 이적 선수의 경기 출전

1. 초·중·고등부(U12, U15, U18) 선수의 경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초등부 분할팀의 팀 간 이동은 이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연령 초과 선수의 출전

1. 유급 선수로 등록한 자는 유급 연도에 최종 출전한 경기일로부터 만 1년 동안 출전이 제한된다.
2. 팀은 연령 초과자를 2명까지 대회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7조 (지도자 및 임원의 리그 참가 신청 자격)

① 지도자의 경우 KFA 등록규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발급한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참가팀은 감독 1명을 필수로 등록하여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KFA 등록규정에 따른 지도자 자격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감독(*필수 등록)	코치	GK코치	피지컬 코치 (2022년부터 적용)
U12	AFC C급 이상(KFA 3급)	KFA D급 이상(KFA 4급)	GK Lv1	피트니스 Lv1
U15, U18	AFC B급 이상(KFA 2급)	AFC C급 이상(KFA 3급)	GK Lv1	피트니스 Lv1

③ 임원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한축구협회 각종 규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8조 (지도자와 임원의 리그 참가 신청)

① 지도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 및 리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임원(팀 대표, 팀 단장, 축구부장, 행정 등) 및 선수관리담당자(주치의, 의무)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 및 참가 신청이 가능하나, 참가 신청 인원은 최대 7인까지 가능하다. 단, 참가신청한 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중앙조직위원회 또는 시도조직위원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인 지도자 및 임원은 리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 중 벤치 착석과 선수 지도 (지도자의 경우)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④ 지도자 및 임원은 전문 축구팀 내 2개 이상의 팀에 중복 참가신청이 불가하다. 단, 팀 대표(단장) 및 선수 관리 담당자는 동일 직급으로 중복 신청 가능하다.

⑤ 2025년까지는 초등부 분할팀의 지도자 및 임원의 중복 참가신청이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불가하다.

9조 (리그 참가 증명서의 발급)

① 대한축구협회는「팀, 지도자, 선수」의 리그 참가 실적, 등록 실적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한다(인터넷 발급 등).

② 증명서 중 리그 참가와 관련한 증명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선수 실적 증명서 : 선수의 리그 참가 및 출전 경기, 출전 시간, 득점, 수상 실적 등
2. 지도자 실적 증명서 : 지도자의 리그 참가 및 입상, 수상 실적, 순위 등
3. 팀 실적 증명서 : 대한축구협회 증명서 발급 기준에 따른다.

③ 선수의 리그 출전 기록은 실제 경기에 참여한 시간만 인정한다.

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 및 본 리그 주최자의 결정에 따른다.

6장 리그 방식 및 경기 일정

1조 (구분)

본 리그는 참가팀의 학제에 따라 초등, 중등, 고등부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권역 리그와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으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조 (권역 리그)

① 권역 리그는 풀리그로 진행하고, 홈 앤드 어웨이 경기 방식을 권장한다. 중립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으며, 경기장은 해당 권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시도조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리그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③ 권역 리그의 팀 편성, 경기 일정 및 장소는 시도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앙조직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는 개별 권역리그가 전국 대회로 정부 승인을 받은 대회로 2개 이상의 시도협회에 소속된 팀이 참가하는 권역 편성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 조정 및 결정 권한은 중앙조직위원회에 있다.**

④ 대표자 회의는 시도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⑤ 참가팀 권역 편성 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동일 리그 안에 학교팀과 클럽팀을 함께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프로구단에서 운영하는 중.고등부 축구 팀 (학교팀, 클럽팀)은 분리하여 별도의 권역으로 편성한다.

⑥ 초등부 분할팀 및 동일 팀 추정 별도 법인 팀은 한 개 권역으로만 진행 시에 동일 권역 편성이 가능하다. 단, 초등부에 한해 운동장 대관 협조 등 시도협회에서 특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 후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1개의 권역 리그 내에 각기 다른 시도축구협회 소속 팀이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팀이 속해 있는 시도조직위원회가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도협회의 합의에 따라 주관이 변경될 수 있다.)

⑧ 중·고등부의 경우 홈경기를 자신이 확보한 경기장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팀은 '부록 1'의 「홈경기 신청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 사항을 구비하여 시도조직위원회에 신청하고, 시도협회는 관련 사항을 중앙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 결정한다.

⑨ 경기 일정 및 대진은 대한축구협회 통합 온라인시스템(joinkfa.com)에 게재된 내용을 최종으로 한다.

⑩ 초등 권역 리그 순위 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은 아래 순서와 같다.

1. 리그 전체 경기의 승점(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

2. 두 팀 이상이 리그 전체 경기에서 동일한 승점을 획득했을 경우, 순위 결정을 위해 아래의 기준을 각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

가. 승자승 규칙

ⅰ. 동일 승점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승점이 높은 순

(단, 승자승 성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아래 「나.」목을 적용한다.)

나. 리그 전체 경기에서 획득한 페어플레이 점수가 낮은 순

> **※ 페어플레이 점수 부여 방식(회당 기준) : 벌점 누계가 낮은 팀이 상위 순위에 위치함**
> - **선수는 경고 당 1점, 경고 누적(2회) 퇴장 3점, 직접 퇴장 3점, 경고 1회 후 직접 퇴장 4점의 벌점 부여**
> - **지도자 및 임원의 경우 경고 당 2점, 경고 누적(2회) 퇴장 4점, 직접 퇴장 4점, 경고 1회 후 직접 퇴장 6점의 벌점을 부여**
> - **페어플레이 점수는 선수 및 지도자, 임원 개인별로 각각 적용됨**
> - **리그공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팀 경고는 6점의 벌점 부여**
> - **리그공정위원회 및 공정(소)위원회 회부에 따른 결정 사항에 따라 경고 1점, 출전 정지 1경기당 2점의 벌점 부여 (기간으로 부여되는 경우 1개월 기준으로 4경기 출전 정지로 적용)**

다. 추첨: 해당 권역리그의 주관단체가 실시

⑪ 중, 고등 권역 리그 순위 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은 아래 순서와 같다.

1. 리그 전체 경기의 승점(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
2. 두 팀 이상이 리그 전체 경기에서 동일한 승점을 획득했을 경우, 순위 결정을 위해 아래의 기준을 각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

가. 승자승 규칙

Ⅰ. 동일 승점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승점이 높은 순

Ⅱ. 동일 승점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골 득실차가 높은 순

Ⅲ. 동일 승점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다득점이 높은 순

나. 타이브레이크

• 승자승 규칙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동일한 팀이 있을 경우, 해당 팀들 간에 승자승 절차를 다시 적용

Ⅰ. 해당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승점이 높은 순

Ⅱ. 해당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골 득실차가 높은 순

Ⅲ. 해당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다득점이 높은 순

다. 리그 전체 경기에서 획득한 골 득실차가 높은 순

라. 리그 전체 경기에서 획득한 다득점이 높은 순

마. 리그 전체 경기에서 획득한 페어플레이 점수가 낮은 순 * 「⑩」 페어플레이 규칙과 동일

바. 추첨: 해당 권역리그 주관단체가 실시

※ 단, K리그 주니어의 순위 결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정함

3조 (고등부)왕중왕전 개최 방식 및 출전팀 결정

① 왕중왕전은「고등리그」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대회다.

② 왕중왕전 주관은 중앙조직위원회에서 한다. 단, 개최지역 지자체 및 시도협회에 대회 주관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왕중왕전 참가팀은 64팀으로 한다.

④ 왕중왕전은 전반기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한다. (후반기 진행 시 별도 안내)

⑤ 왕중왕전의 경우, 전·후반 경기 후에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준결승까지는 곧바로 승부차기를 실시하고, 결승전은 연장전 실시 후 무승부 시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단,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⑥ 왕중왕전의 기간 및 장소는 중앙 조직위원회가 결정한다.

⑦ 대진 추첨은 중앙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⑧ 왕중왕전의 대회 규정은 대표자 회의에서 별도 공지한다.

⑨ 왕중왕전은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대회' 대표팀 및 선수 선발대회를 겸할 수 있다. 단, 대한체육회의 별도 결정 사항 발생 시 해당 대회의 선발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

⑩ 권역 리그 결과에 따라 왕중왕전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의 자격은 리그 개막 후 중앙 조직위원회에서 시도조직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공지한다.

※ 각종 사유로 인한 리그 중도 포기 및 실격 팀 발생에 따라, 각 왕중왕전 진출팀 산정 및 공지는 다음과 같다. - 1차 공지 : 권역리그 개막 후 - 2차 공지 *산정기준 : 해당 권역 일정 1/2 경과한 후의 팀 수 *공지 시점 : 각 급 권역리그 일정 중 가장 마지막으로 1/2 경과한 이후 *공지 방법 : 급별 일정에 따라 시도조직위원회 통보하며, 각 시도조직위원회는 대상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협회 등록규정 별지6. U18 선수의 계약 및 성인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에 의거, 프로 구단이 운영하는 U18팀 선수 중 등록일 기준으로 1회 이상 FIFA, AFC, 협회, 프로축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성인 대회 공식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경우, 프로 산하 U18 팀 간의 경기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⑫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앙 조직위원회에서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4조 (초등) 시도대항전, (중등) 왕중왕전 개최 방식 및 출전팀 결정
세부적인 경기 방식, 선발 방식 등은 별도 공지한다.

5조 (경기 일정의 변경)
① 경기 날짜, 시간, 장소, 대진 등 경기 일정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중앙조직위원회가 갖는다.
② 시도조직위원회가 권역 리그의 경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기일 2일 전까지 시도조직위원회가 직접 변경한 후 중앙조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일정 변경에 따른 현저한 문제 발생 시 중앙조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경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중앙 또는 시도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즉시 해당 팀에게 통보 후 KFA 온라인 등록시스템(joinkfa.com)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일반 팬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팀의 사유로 인해 권역리그 경기 일정이 변경되어 개별 경기가 발생할 경우
1. 중앙조직위원회 -「심판 및 감독관 수당」 부담
2. 해당 팀 -「운동장 및 구급차 사용료, 의무요원 및 경기보조요원 수당, 기타 제반 비용」 부담
⑤ 경기 당일 해당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 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경우, 경기 일정 연기를 적극 권장한다.
시도조직위원회가 경기 일정 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변경 사항은 중앙조직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미세먼지

가.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에 따른 조치사항

등급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운영지침
나쁨	81-150㎍/㎥	36-75㎍/㎥	▸ 당일 경기 시간 조정 또는 경기일 연기 권장
매우 나쁨	151㎍/㎥ 이상	76㎍/㎥ 이상	▸ 당일 경기일 연기 권장 -. 저연령 선수의 경우 가급적 적용

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발령)

등급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운영지침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 150 ㎍/㎥ 이상(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75 ㎍/㎥ 이상(2시간 지속)	▸ 경기일 연기 적극 권장 -. 초등부 경기일 연기(의무사항)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 300 ㎍/㎥ 지속(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150 ㎍/㎥ 이상(2시간 지속)	▸ 경기일 연기 (의무사항)

2. 폭염

등급	기준	운영지침
주의보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경기 중지 권장 -. 휴식 후 재개/취소 결정
경보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경기일 연기 적극 권장

※ 18시 이후 진행되는 야간경기 및 실내경기 관련 내용 추후 안내

6조 (리그 방식의 공지)
리그 방식의 공지는 리그 개시 전에 규정집 배포,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하며 시도조직위원회는 규정 내용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장 경기 규정

1조 (경기 규칙)

본 리그는 국제축구평의회 (IFAB) 경기 규칙을 적용하고, 초등부의 경우 대한축구협회(KFA) 8인제 경기 규칙을 준용한다. 기타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조 (경기 시간)

본 리그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경기 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시간	비고
초등	전·후반 각 25분	하프타임 휴식시간은 10분 전·후로 하되, 15분 초과하지 않는다.
중등	전·후반 각 40분	단, 대회 기간이나 방식, 날씨 등을 고려하여 경기시간 및 하프타임은
고등	전·후반 각 45분	조정될 수 있다.

*초등부의 경우, 1팀 1일 2경기 시에는 해당 2경기 모두 전·후반 각 20분으로 진행 할 수 있다.

3조 (경기장)

① 본 리그의 경기장은 IFAB 경기 규칙(초등부의 경우 8인제 경기규칙)에 준하여 시도조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중등 및 고등부 참가팀은 학교 운동장 또는 지역 내 경기장을 확보하여 홈경기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4조 (사용구)

① 사용구는 초등부의 경우 4호 볼인 '스포츠트라이브 NEW S1+PLUS'로 한다.

② 중·고등부의 경우 5호 볼인 '스포츠트라이브 NEW S1+PLUS'로 한다.

5조 (리그운영감독관)

① 리그운영감독관은 해당 경기를 주관,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대한축구협회의 리그운영감독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승인 받은 사람이여야 한다.

② 리그운영감독관은 경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경기 중에는 경기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리그운영감독관의 활동은 '부록6'의 「리그운영감독관 활동」에 준한다.

6조 (심판)

본 리그의 심판은 대한축구협회 심판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7조 (선수의 출전 및 교체)

①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 개시 6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표 상에 명시된 경기 개시 시각 15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 몰수 처리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 선수는 소속팀의 리그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선수에 한한다.

③ 이적 및 유급선수의 리그 출전은 5장 6조에 따른다.

④ 명단 제출

1.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경기 당일 리그 참가신청서를 대한축구협회 KFA 온라인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출력 후, 경기 개시 60분 전까지 출전 선수 23명(선발 출전11명과 교체 대상 12명/초등부 선발 출전 8명과 교체 대상 10명)의 명단 2부와 KFA 등록증을 해당 리그운영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수명단 제출방식(joinkfa 모바일 앱 또는 출력본 현장 제출)은 시도조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가. 선발 출전선수 11명(초등부 당일 출전 선수 18명 전원)은 KFA 등록증을 소지하고 장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당일 선발 출전선수(중,고등:11명) 중 경기 시작(킥오프) 이후 해당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발생한 경우,

리그운영감독관은 해당 선수가 실제로 경기장에 투입된 시간을 경기감독관 보고서에 명시하고 시도조직위원회를 통해 중앙조직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당일 선발 출전선수 중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발생한 경우, 리그운영감독관은 해당 선수의 출전 여부를 경기감독관 보고서에 명시하고 시도조직위원회를 통해 중앙조직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중앙조직위원회는 해당 선수의 실제 출전 시간을 산출하여 전산을 통해 출전시간을 수정한다.

라. 경기 중 교체 선수는 본인의 KFA 등록증을 직접 감독관 또는 대기심판에게 제출하여 교체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KFA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바. KFA 등록증 발급은 'KFA 등록증 발급 매뉴얼'에 따른다.

⑤ 중, 고등부의 선수 교체는 아래와 같다.

1. 선수 교체는 팀당 7명 이내로 하되, 경기 개시 전에 제출된 교체 대상 선수(12명)에 한한다.
2. 교체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한다. 단, 하프타임 교체는 교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뇌진탕으로 인한 추가 영구 교체 허용으로 경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원칙』

- 각 팀은 경기당 최대 1명 '뇌진탕 교체 선수' 가능
- 뇌진탕 교체는 기존 교체된 선수 숫자와 무관
- 뇌진탕 교체 사용시 상대팀도 '추가 교체' 가능, 이때 교체 사유는 상관 없음

『절차』

❍ '뇌진탕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 뇌진탕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즉시
* 경기장 (온필드) 에서 검사 / 또는 경기장 밖에서 검사한 이후
* 언제든지 뇌진탕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때, 선수가 기존에 검사 받고 경기장에 복귀한 경우 포함

- 뇌진탕 교체 여부는 팀이 결정, 심판진 참여 불가능
- 뇌진탕 교체 시, 다른 색상의 교체용지 사용
- 뇌진탕 교체 즉시, 상대팀에게 추가교체 기회 알림

『교체 기회 및 기타』

- 일반교체 횟수와 별개
- 뇌진탕 교체를 위해 일반 교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팀은 추가 교체 기회 없음
- 뇌진탕 교체 악용시, 심판이 대회 주최측 보고 의무

『뇌진탕 교체후 선수의 경기출전』

- 뇌진탕 교체 선수의 보호를 위하여 교체일 다음날부터 2일 동안 경기 출전을 제한 한다.

뇌진탕교체 사용일	1일	2일	3일
	불가 X	불가 X	출전 O

- FIFA 뇌진탕 프로토콜에 따라 팀의 책임 하에 의료진 (병원)의 진단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제출 문서 없음)

* 참조 : (joinkfa.com) FIFA 뇌진탕 유소년 프로토콜

4. 왕중왕전에서 전·후반 경기 후 무승부 시 연장전에서는 누적 교체 횟수에 상관없이 1회의 교체만 허용한다 단, 전·후반 경기중 선수 7명을 모두 교체한 경우, 연장전에서 선수 교체는 불가하다.

⑥ 초등부의 경우 교체 대상 선수 수는 최대 10명으로 하며, 수시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 초등부 8인제 선수 교체 절차
- 교체선수의 명단은 경기 시작 전에 주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경기 중 선수교체는 심판의 허가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 참가팀은 교체선수가 입을 수 있는 조끼를 준비할 의무가 있으며, 교체선수는 모두 팀 조끼를 착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선수 교체는 경기장내 자기 팀의 교체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 교체선수는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교체 아웃되어 나오는 선수에 전달한 후 자기팀 교체지역을 통해서 경기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 재 교체(수시교체) 교체된 선수는 그 이후에도 다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골키퍼와 필드 선수의 포지션 변경이 가능하나 주심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골키퍼의 교체는 경기가 중단된 이후에 가능하다.

⑦ 팀이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한 후 선수를 교체 하고자 할 경우,

1. 기 제출된 출전선수 11명(초등부 8명)과 교체 대상 선수 12명(초등부 10명)간에만 허용하며, 경기 개시 전까지 리그운영감독관 승인 하에 교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선수교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당초 선발 출전선수는 해당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중등부, 고등부). 또한, 교체 대상 선수 수는 줄어든다. 단, 해당 팀의 교체 가능 횟수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2. 경기 개시 혹은 후반전 및 연장전 시작 전, 선발 또는 기존 출전선수와 교체 선수가 바뀐 것을 주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IFAB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보고된 사항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IFAB 경기규칙서 규칙 3.선수 내 5.반칙과 처벌 중>

선발선수와 교체선수가 통보 없이 바뀐 경우
- 주심은 그 명단의 교체 선수가 계속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한다.
- 그 명단의 교체선수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 선발출전하기로 했던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될 수 있다.
- 교체 허용 선수 숫자는 감소하지 않는다.
- 주심은 이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

후반전 또는 연장전 시작 전 기존 출전선수와 교체선수가 통보 없이 바뀐 경우

(교체 허용 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한다.
- 교체선수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 기존 출전 선수는 교체선수가 될 수 없다.
- 교체 허용 선수 숫자는 감소한다.
- 주심은 이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

⑧ 다음과 같은 조건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한 후(교체 불가) 경기는 계속 진행하며 해당 팀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중·고등부 왕중왕전(초등부 시도대항전)에서는 몰수패 처리한다.

1. 징계기간 미경과 선수
2. 유급선수의 경우 유급 직전연도 리그 출전일이 미경과한 선수

⑨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선발출전 선수, 교체 선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 해당 선수는 기존 출전 선수와 즉시 재교체하여 경기를 진행하며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경기 종료 후에라도 위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해당 팀은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⑩ '학교장 확인서' 및 '학교폭력부존재 서약서' 미제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경기중 또는 경기후에 발각되었을 경우 경기는 그대로 인정하며, 해당팀 및 지도자는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⑪ 위 5항에 명시된 교체 인원 및 횟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실시된 경우, 발각되는 즉시 해당 교체는 무효로 하고, 초과 교체로 교체되어 나간 선수가 다시 경기에 출전하여야 하며 초과 교체로 출전한 선수는 벤치로 복귀하여야 한다. 교체 인원 및 교체 횟수가 초과된 사실이 경기 종료 후에 발각되었을 경우, 경기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고 해당팀 및 지도자는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8조 (벤치 착석 대상)

① 경기 중 벤치 착석은 대회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지도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선수」에 한하며, 반드시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 미 패용 시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퇴장 조치한다.

②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 온라인시스템(http://joinkfa.com)을 통해 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리그운영감독관 확인 요청 시 「KFA등록증 및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리그에 참가하는 각 팀의 지도자는 「등록규정 제35조(지도자 등록기준)」 1항 '전문 축구 팀의 지도자 등록기준(감독)'에 부합[U12-AFC C급(KFA 3급) / U15,U18-AFC B급(KFA 2급)]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최소 1명 이상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3회 이상 벤치 착석(리그 참가 등)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 및 지도자는 리그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징계 중인 지도자, 임원, 선수는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벤치에 착석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인 지도자, 임원, 선수는 징계 기간 동안 팀 벤치, 선수대기실, 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이 불가하다.

※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 3장 징계 제 13조(종류)

대상	징계의 종류	정의
등록단체의 소속원 (선수, 지도자, 임원), 심판 등 협회의 행정 적용을 받는 자	자격정지	일정 기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이 불가됨. (팀벤치, 선수대기실, 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 금지)
	출전정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 경기 수의 출전을 정지시킴. (팀벤치, 선수대기실, 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 금지)
	경고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함.

⑥ 벤치 착석 인원 중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패용한 지도자에 한하여 지도행위가 가능하며, 비정상적인 지도행위[임원의 지도행위, 기술지역 밖(관중석 등)에서의 지도행위 등]는 리그운영감독관 판단 하에 경기장에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팀은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초등부 8인제 경기 도입과 더불어 초등부 경기는 KFA 8인제 경기규칙에 따른다.

⑦ 벤치에 착석하는 대상은 선수의 복지와 안전, 전술적/코칭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형, 이동식,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장비(즉 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핸드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는 사용할 수 있다.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자/통신 장비를 사용한 결과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면 기술 지역에서 퇴장 당한다.

9조 (재경기 실시)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필드상황, 날씨, 정전에 의한 조명 문제 등)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② 재경기는 중앙조직위원회 또는 시도조직위원회가 결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 시점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선수교체는 순연경기를 포함하여 팀당 교체횟수 3회, 7명(초등 10명) 이내로 한다.
3.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④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1. 출전선수 및 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2. 선수교체는 순연경기를 포함하여 팀당 교체횟수 3회, 7명(초등 10명) 이내로 한다.
3. 경기 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⑤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경기번호의 변동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일정의 경기 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⑥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10조 (유니폼 및 장비)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 장비는 보석류를 포함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리그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 당일 유니폼 2벌(스타킹 포함)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팀의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간의 색상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경기당일 유니폼 착용은 아래의 배정 기준을 고려하여 리그 운영 감독관 및 심판진의 결정에 따른다.

우선순위	홈 팀	원정 팀
1	주 유니폼	보조 유니폼
2	주 유니폼	주 유니폼
3	주 유니폼	주+보조 유니폼 혼합
4	보조 유니폼	주 또는 보조 유니폼

※ 상기 4항에도 불구하고 양팀간의 유니폼 색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1벌의 유니폼만 지참한 팀이 조끼를 입어야한다.
⑤ 유니폼의 번호 표기는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⑥ 기능성 의류를 입고 출전할 때는 상·하 유니폼과 각각 동일한 색상을 입어야 한다. 단, 초등리그에 한하여 기능성 의류의 색상이 상·하의 주색상과 달라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팀 전체의 기능성의류의 색상은 동일해야 된다.
*대회[동계 및 하계 대회 등]의 경우 대회 규정을 따른다.
⑦ 스타킹 위에 테이핑 또는 비슷한 재질의 색상은 스타킹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한다.
⑧ 담배, 주류 등 유·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는 불가하다.
⑨ 출전 선수는 신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⑩ 경기에 출전하는 팀의 주장 선수는 완장을 차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⑪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팀과 무관한 국내외 다른 팀의 엠블럼이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선수의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⑫ 중앙조직위원회는 리그 참가팀 유니폼에 리스펙트 캠페인 패치 부착을 권장한다.
⑬ 리그 참가팀은 중앙조직위원회에서 리그 엠블럼 및 캠페인 패치를 제공할 경우, 유니폼에 의무적으로 부착한다.

11조 (경고)
① 권역리그 경기 중 최초 3회 경고 누적 선수, 지도자, 임원은 다음 1경기(경기 번호의 변동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일정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이후 2회 경고 누적 시 마다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② 경기 중 경고 2회로 퇴장당한 선수, 지도자, 임원은 다음 1경기(경기 번호의 변동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일정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경기 중 1회 경고를 받은 선수, 지도자 임원이 경고 없이 바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 초에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④ 이전 경기까지 경고 누적 1회인 선수가 해당 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당했을 경우, 퇴장 당시 받은 경고 2회는 경고 누적 횟수에서 제외된다. 당초에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⑤ 권역 리그 경기에서 받은 경고(누적경고 포함)는 플레이오프전 및 왕중왕전(시도대항전)에 연계되지 않는다. 플레이오프전에서 받은 경고 또한 왕중왕전에 연계되지 않는다.

⑥ 선수가 본 리그 기간 중 이적하더라도 이미 받은 경고는 새로 이적한 팀에서 연계 적용된다.

⑦ 경고 누적으로 인한 출전정지 대상 경기가 몰수 또는 실격 처리된 경우, 출전정지 이행으로 간주한다.

⑧ 연중 풀리그가 아닌 전·후반기 리그 또는 스플릿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경고는 연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2조 (퇴장)

① 경기 도중 퇴장 당한 선수, 지도자, 임원은 다음 1경기(경기 번호의 변동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일정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②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시도공정소위원회는 잔여 경기의 출전금지 횟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권역 리그 최종 경기에서 당한 퇴장은 플레이오프전 및 왕중왕전(시도대항전)에 연계 적용된다.

④ 경기 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지도자 또는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 파괴, 폭력 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행위를 한 지도자와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경기 도중 퇴장 당한 선수가 본 리그 기간 중 이적하더라도 본 리그에서는 퇴장의 효력이 그대로 연계 적용된다.

⑦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 대상 경기가 몰수 또는 실격 처리된 경우, 출전정지 이행으로 간주한다.

⑧ 연중 풀리그가 아닌 전·후반기 리그 또는 스플릿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퇴장은 연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3조 (몰수)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②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팀은 몰수 처리한다.

1. 팀이 일정표상의 경기 개시 시각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한다.
2. 해당 팀에 선수 등록은 하였으나 리그 참가신청서 명단에 없는 선수가 출전했을 경우
3. 해당 팀에 선수 등록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4. 경기 당일 첫 번째 경기를 갖는 팀의 경우 일정표 상에 명시된 경기시간 15분 전까지 KFA등록증 소지자가 7명 미만(초등부 6명 미만)일 경우.
5. 경기 당일 첫 번째 경기 이후 경기를 갖는 팀의 경우 앞 경기 종료 15분 전까지 KFA등록증 소지자가 7명 미만(초등부 6명 미만)일 경우.
6. 경기 도중 퇴장, 부상 및 기타 사유로 경기 가능한 선수가 7명 미만(초등부 6명 미만)일 경우.
7. 경기 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팀이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뒤 감독관 등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8. 위 '6목'의 경기 지연 또는 경기장 이탈 행위를 한 팀이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했으나 경기 재개 후 재차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뒤, 감독관 등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주어진 3분 중에서 잔여 시간 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9. 본인 명의 외 다른 선수, 지도자 및 임원의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제출하거나 패용한 후 경기에 참가한 경우

10. 그 외의 경기 출전 자격 위반 행위나 경기 포기 행위를 할 경우

③ 해당 경기 몰수 팀에 대해서는 패 처리하며, 상대팀에게는 스코어 3:0 승리로 처리한다. 또한 권역 리그 경기에서는 승점 3점을 준다. 단 세 골 차 이상으로 승리했거나 이기고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④ 왕중왕전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경기종료 이후 몰수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몰수 처리하며 상대팀도 소생하지 못한다.

⑤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이 경기 종료 이후 몰수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우승 팀의 자격을 취소하고 우승 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몰수 처리 경기라 하더라도 경기가 이미 진행된 경기에 한해서 득점, 경고, 퇴장 등 양팀 선수 개인의 기록 및 실적은 인정한다. 단, 몰수팀의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가 경기 출전 시 해당선수의 기록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14조 (실격)

① 실격이라 함은 본 리그 모든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② 권역리그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팀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1. 권역리그 대표자회의 후 권역리그 전체 일정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힌 경우
2. 권역리그의 잔여 경기를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해당 연도 권역리그에서 2회 몰수 처리된 경우

③ 권역별 전체경기 수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실격된 경우에는 실격 팀과의 잔여 경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권역 리그에서 얻은 승점 및 스코어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단, 권역별 전체경기 수의 2분의 1 이후에 실격팀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경기의 경기결과를 인정하고, 잔여경기는 3:0으로 처리한다.

1. 연중 풀리그의 경우 권역별 전체 경기 수의 2분의 1로 산출
2. 전, 후반기 또는 스플릿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진(홈, 어웨이 확정된 대진 기준)의 2분의 1로 산출

④ 왕중왕전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경기 후 실격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실격 처리하며 상대팀도 소생하지 못한다.

⑤ 실격 팀과의 경기라 하더라도 득점, 경고, 퇴장 등 양 팀 선수 개인의 기록 및 실적은 인정한다. 단, 실격팀의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가 경기 출전시 해당선수의 기록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실격 또는 중도 하차를 하게 되는 팀은 리그 라이선스가 박탈되고 재참가를 원할 시에 리그 라이선스를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단, 대한축구협회 및 시도협회는 필요시 별도 심의를 통해 라이선스 신규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팀의 리그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5조 (징계 회부 사항)

① 경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심의한다.

1. KFA 등록증을 패용하지 않은 지도자, 선수, 임원이 팀 벤치에 착석하거나 지도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지도행위를 한 경우
2. 징계기간 미경과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3. 유급선수가 유급 직전 년도에 최종 출전한 경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전하였을 경우
4. 3명 이상의 연령초과 선수를 출전시킨 경우(조기입학으로 인하여 유급한 자는 제외)
5. 출전정지 징계중인 지도자가 경기 중 경기장 내(벤치 포함)에서 팀을 지도했을 경우
6. 자격정지 징계중인 지도자가 장소를 불문하고 지도 행위를 했을 경우
7. 경기 중 지도자 또는 임원이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했을 경우
8. 몰수 또는 실격 행위를 했을 경우
9. 등록 또는 리그 참가 신청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징계 심의가 필요한 경우
10. 리그 참가 신청 완료 후, 리그 참가 취소를 통보한 경우
11. 경기 진행에 지장을 주는 항의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12. 경기 중 폭언, 폭설(욕설), 인격모독, 성희롱 행위를 한 지도자, 임원, 선수의 경우
13. 기타 리그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및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행위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징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대회·훈련 참가 학교장확인서' 및 '감염병 관련 서약서' 등의 서류 허위 제출 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소위원회로 즉시 회부하여 징계를 심의한다.

③ 징계 회부 시에는 리그사무국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6조 (규정의 공지)

규정의 공지는 리그 개시 전에 규정집 배포, 공식 사이트 공지 등을 통해 실시하며, 시도조직위원회는 규정 내용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8장 징계 및 포상

1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리그에 참가하거나 관여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2조 (조직 구성)

① 징계의 심의는 시도공정소위원회에서 한다.

② 시도공정소위원회는 본 규정집 3장 7조에 따라 구성한다. 단, 리그포상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조 (심의 사항)

시도공정소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본 리그와 관련한 단체, 개인에 대한 징계의 심의, 결정과 품의

②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건의 및 위임된 건의사항 처리

③ 경기와 관련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④ 수업 불참, 수업 시간 중 훈련 등 교육 정책과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심의

⑤ 기타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건의 및 자문

4조 (시도공정소위원회 운영)

① 시도공정소위원회는 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② 시도공정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대상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팩스, 이메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개최되는 시도공정소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도공정소위원회는 선수, 지도자, 임원에 대한 징계 시 「최대 4경기」 또는 「1개월 이하」의 출전 정지, 팀에 대한 징계 시 「경고 이상 승점 감점 이하」 등 유형별 긴급제재 징계 유형에 의거하여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 3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시도공정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소위원회에 추가 심의를 건의할 수 있다.

5조 (포상의 종류)

본 리그 포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권역 리그

구분	단체상	개인상	비고
중,고등	우승/준우승/3위 /페어플레이팀	최우수선수상/우수선수상 /수비상/골키퍼상 /최우수지도자상/심판상	- 참가팀 7팀 이하 권역리그는 3위 시상 없음 - 심판상은 시도FA 당 1명 선정

1. 고등부 권역리그 시상은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로 총 2회 진행한다. 단, 전반기 시상은 트로피 등 각종 시상품을 지급하지만, 후반기 시상은 상장만 지급한다.

2. 권역리그에서 퇴장 및 징계 조치를 받은 지도자,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단, 아래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가. 한 경기에 경고 2회 퇴장된 선수는 시상한다

3. 페어플레이 점수가 동일한 경우 6장 2조 11항의 중,고등 리그의 순위 결정의 우선기준을 적용한다.

② 왕중왕전

구분	단체상	개인상	비고
중등	별도 공지	좌동	대한축구협회는 입상팀(단체상)에게 상금을 지원할 수 있음
고등	우승/준우승/공동3위/페어플레이팀	최우수선수상/우수선수상/득점상/베스트영플레이어상/수비상/골키퍼상/최우수지도자상/우수지도자상/심판상	

1.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 득점상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출전 경기수가 적은 선수 → 출전 시간 이 적은 선수」 순에 따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상 대상자가 3명 이상일 때는 기록은 유효 하나 상은 취소한다.
2.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에서 퇴장 및 징계 조치를 받은 지도자,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단, 아래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가. 한 경기에 경고 2회 퇴장된 선수는 시상한다.

나. 득점상의 경우 대상자는 시상한다. 단, 심각한 반칙 행위 등으로 대회 공정위원회 회부되어 추가 징계를 받을 사항의 경우 시상식에서 제외한다.

③ 권역리그 또는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에서 몰수 이상(승점, 감점 포함)의 팀 징계를 받을 경우 모든 시상 및 포상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수조치 한다.

④ 아래 특별상 및 그린카드 상은 대회 주최측 사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서 수상 여부를 결정한다.

⑤ 특별상

1. 모범팀상(리그 성적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팀)
2. 인재상(리그 성적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선수)
3. 특별상 시상 대상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⑥ 그린카드상(경기나 대회 중 우수한 페어플레이정신을 보여준 팀에게 수여하는 상)은 급별 1팀씩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팀은 대한축구협회에서 결정한다.

6조 (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여 중앙 또는 시도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심판 판정(경고 및 퇴장 등)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도 부정행위, 비리 등의 사유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이 제소는 피해 당사자 또는 친권자, 법정 대리인, 소속팀 대표자 명의로 중앙 또는 해당 시도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7조 (징계 심의의 공지 및 진술권)

① 시도공정소위원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 또는 소속팀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 심의 대상은 시도공정소위원회 심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조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

① 각 위반 행위에 따른 시도공정소위원회의 징계 기준은 본 규정집 '부록 3'에 있는 유형별 긴급제재 기준에 따른다.

② 기간으로 정하는 징계가 효과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경기 출전 횟수의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징계로 인한 출전정지 대상 경기가 몰수 또는 실격 처리된 경우, 출전정지 이행으로 간주한다.

9조 (징계의 효력 발생)

① 시도공정소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의 효력은 징계 결정 사실을 대상자 또는 소속 팀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접수되는 순간부터 발효된다.

② 시도공정소위원회는 징계 결정 후 대한축구협회 공정소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0조 (재심, 징계의 경감 및 해제 대상 제외)

시도공정소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처분은 긴급 제재이므로 재심 청구 또는 경감,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1조 (기타)

징계와 관련하여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또는 중앙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9장 팀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

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정부보조금 및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및 자체수익금을 통해 팀에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2조 (지원금 정의)

'지원금'이라 함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참가팀에 지원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

3조 (운영주체)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주체는 대한축구협회로 한다.

4조 (지침의 적용범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법령 및 관리·운용지침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조 (회계연도)

지원금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6조 (장거리 원정팀 숙식 보조비 지원)

① 중앙조직위원회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팀 중 ②항의 기준표에 해당하고 지원 절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팀에게 장거리 원정 숙식 보조비를 지원한다.

② 장거리 원정팀 숙식 보조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기준
초등부	편도 거리 150km 이상 또는 차량 편도 소요시간 2시간 이상
중등부	편도 거리 150km 이상 또는 차량 편도 소요시간 2시간 이상
고등부	편도 거리 150km 이상 또는 차량 편도 소요시간 2시간 이상

※ 거리 및 소요 시간 기준은『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또는 다음(Daum) 지도의 자동차 길찾기 검색』에서 공시한 '실시간 교통 정보 제외' 및 '추천경로(도로옵션 없음)' 항목에 표기된 거리와 시간만 인정함.

※ K1-K4리그 산하 팀(U12, U15, U18) 및 저학년리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장거리 원정팀의 1회당 숙식 보조비 지급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숙박비	식비	교통비
초등부	최대 500,000원		
중등부	최대 600,000원		
고등부	최대 600,000원		

※ 항목 간(숙박비, 식비, 교통비) 전용은 가능하며, 보조비 한도액 이상 집행 시에도 4항에 명시된 항목별 한도액까지만 지급됨(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교통비(유류비 또는 버스대절비)집행이 가능함

④ 권역리그 장거리 원정팀 숙식 보조비 지원 절차

1. 승인신청

위 ②항의「장거리 원정팀 숙식 보조비 지원」기준표에 의거하여 원정숙식을 희망하는 팀에서는 등록 시도축구협회에 학교장 공문과 관련서류(장거리원정팀 숙식보조비 승인 신청서,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또는 다음(Daum) 지도의 자동차 길찾기 검색 결과, 당해 연도 검색 결과만 승인)를 경기 일 전월 15일까지 제출한다.

2. 승인

신청서를 접수 한 시도축구협회는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후, 경기 일 전월 30일까지 승인여부를 신청팀에게 통보하며, 승인결과를 시도협회장 공문으로 중앙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3. 결과보고

승인통보를 받은 팀은 원정경기 후, 학교장 확인 공문과 정산서류를 경기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소속 시도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협회는 검토 후 경기 후 다음달 15일까지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다.

4. 보조비 지원

가. 대한축구협회는 결과보고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경기 후 다음달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해당 학교 회계 계좌(클럽팀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한다. (*개인명의 통장 불가하며, 입금 후라도 추후 적발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나. 소속팀에 대한 지원 내역을 해당 시도협회로 통보한다.

다. 단, 대회 기간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으로 대회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은 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리그 경기를 이틀에 걸쳐 연속 경기 시 1회 보조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거리 이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중앙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2일간 연속 경기(예: 토,일)의 경우, 원정팀 숙식 보조비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팀에 한하여 2회차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	1회차			2회차		
	숙박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초등부	최대 700,000원					
중등부	최대 900,000원					
고등부	최대 900,000원					

※ 숙박을 하지 않은 팀에 경우에도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6조 ③항에 의거한 한도 금액까지만 지원한다.

마. 정산서류를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바. 감염병 등의 천재지변 발생시, 숙식비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한다.

5. 정산서류 제출

가. 학교장 또는 팀대표 확인 공문

나. 장거리 원정팀 숙식보조비 결과보고서

다. 집행서 : 팀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전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팀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첨부

라.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또는 다음(Daum) 지도의 자동차 길 찾기 검색결과 출력분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으로 제출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7조 (왕중왕전 입상팀 상금 지원)

① 중앙조직위원회는 왕중왕전 입상팀(우승 1팀, 준우승 1팀, 공동 3위 2팀)에 대해 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조직위원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단체는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왕중왕전 입상팀에 대한 상금 세부내용은 당해 연도 왕중왕전 대회규정에 따른다.

8조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 지원금)

① 중앙조직위원회는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에 참가하는 팀에 지원금(제주 참가팀 항공교통비)만 일부 보조하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별도 공지한다. 단, 지급 횟수는 팀당 1회로 제한한다.

② 대회기간 중 사고발생으로 인해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 팀과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 계좌 미제출 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기 집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

9조 (정산)

① 중앙조직위원회로부터 각종 경비를 지급받는 단체 및 개인은 본 규정집에 명시된 정산 지침에 따라 정확히 정산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단체, 개인에 대해 중앙조직위원회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한다.

10조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사업의 지원금 사용 및 정산)

「시도협회 지원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다.

▪ 별첨 1 ▪ 장거리 원정팀 숙식 보조비 승인신청서

신청팀	기관명		대표자명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주 소			

신청경기 1	리그명		대진팀		경기번호		비고
	경기장		소요시간		소요거리		연속경기 보조비 신청

신청경기 2	리그명		대진팀		경기번호		비고
	경기장		소요시간		소요거리		

신청경기 3	리그명		대진팀		경기번호		비고
	경기장		소요시간		소요거리		

신청경기 4	리그명		대진팀		경기번호		비고
	경기장		소요시간		소요거리		

신청경기 5	리그명		대진팀		경기번호		비고
	경기장		소요시간		소요거리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운영규정" 제9장 팀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의 「장거리 원정팀 숙식보조비 신청」 기준표에 의거하여 장거리 원정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표자명 : (인)

별첨서류 1. 학교장 공문 1부.

2. 「포털사이트 '다음' 및 '네이버' 지도의 자동차 길찾기 검색」 창의 실제 원정거리 검색결과 출력분 1부.

▪별첨 2 ▪ 장거리 원정팀 숙식보조비 결과보고서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장거리 원정팀 숙식보조비 집행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팀	기 관 명		대 표 자 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사업추진실적

1. 소속리그:
2. 원정기간 :
3. 경기번호 및 경기대진 :
4. 예산집행내역

순번	일자	항목	집행금액	거래처	비고

"2025 전국초중고 축구리그 운영 규정" 제9장 팀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장거리 원정팀 숙식보조비 지원」기준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원정숙식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합계

년 월 일

단 체 명 :
대표자명 : (인)

대 한 축 구 협 회 귀 중

별첨서류 1.「포털사이트 '다음' 및 '네이버' 지도의 자동차 길찾기 검색」창의 실제 원정거리 검색결과 출력분 1부.
2. 집행증빙서(세금계산서 및 해당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서, 은행 이체확인증)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통장사본 1부.

10장 리그 참가팀의 의무

1조 (참가비 납부)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중앙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초등부 10만원(2팀 분리 참가의 경우, 팀당 10만원 납부), 중등부 20만원, 고등부 30만원의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최종적으로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팀은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2조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 시도대항전 참가 의무)

① 본 리그에 참가신청을 한 팀은 의무적으로 리그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본 리그에 참가신청을 한 팀이 신청 마감기간 이후에 리그에 불참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권역리그를 통해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에 참가가 확정된 팀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참가가 불가능한 팀은 팀 대표자 명의의 공문을 통해 본회로 불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의 불참팀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④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반드시 KFA 온라인등록시스템(joinkfa.com)을 통하여 리그 참가에 관한 일체의 정보(공문서, 안내문, 공지사항 등)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팀이 감수하여야 한다.

3조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리그 참가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팀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자료가 미비할 경우 주최 측에서는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지급 대상 팀은 본 규정의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지급 보류 및 취소 또는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조 (규정의 숙지)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반드시 대한축구협회 KFA 온라인 등록시스템(joinkfa.com)에서 리그 운영 규정 및 등록 규정을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확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하여야 한다.

5조 (기타)

① 리그에 참가하는 팀의 대표는 팀 이동과 관련 차량 사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KFA 온라인 등록시스템(joinkfa.com)에서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최종 참가신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에서 감수한다.

③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선발선수 11명 외 교체선수 포함 / 초등의 경우 선발선수 8명 및 교체 선수 10명)은 KFA 등록증을 지참하여 경기 출전 전 리그운영감독관에게 확인 및 제출해야 한다. KFA 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시, 해당 선수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교체선수는 본인의 KFA 등록증을 지참 후 리그운영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여 교체 승인 후 교체되어야 한다.

④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 참가팀은 주최 측에서 지정한 행사(미디어데이 등)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하며, 행사에 불참하는 팀은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 출전에 따른 혜택을 제한 받을 수 있다.

⑤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 입상팀에게 주어지는 상금을 수령하는 팀은 의무적으로 주최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팀에 대해서는 주최 측의 결정에 따라 상금을 환수 조치 받을 수 있다.

⑥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 입상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단 전체가 시상식에 참가하여야 한다.

⑦ 권역리그, 왕중왕전 및 시도대항전 참가팀은 자료제작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본회에서 팀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장 의료 및 안전

1조 (지정 병원 선정)

시도조직위원회는 경기 중 응급사항에 대비하여 지정 병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2조 (구급차)

① 중등 및 고등 경기장에는 산소 호흡기가 구비된 구급차와 의료 차량 표시가 부착된 예비용 차량(승용차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급차에는 기사가 항상 대기하여야 한다.

1. 단, 병원이 충분히 많고 경기장이 부족한 서울지역의 경우, 홈경기로 분산 운영되는 중등 경기장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구급차를 구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2. 또한, 구급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제주 지역의 경우, 1개의 구급차로 인근 경기장들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안전 대책을 세워서 진행한다.

<구급차를 대체하는 안전 대책 방법 : 초등 경기장, 서울 중등 홈경기 진행 시, 제주 초중고 경기장>

㉠ 예비 차량 배치
㉡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응급처치 가능자
㉢ 인근 병원 등 관련 기관과 긴급 연락망 구축
㉣ 지도자 CPR 교육
㉤ 참가팀 사전 고지

* 중앙조직위원회는 필요 시, 시도조직위원회 및 홈경기 운영 팀에 위의 안전 대책 방법 외 추가 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초등 경기장의 경우, 8인제(성인1개 구장을 2면으로 사용 시)의 경우 1개의 구급차로 배치할 수 있다. 단, 2024년부터는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구급차를 구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③ 구급차를 대체하는 안전 대책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기장의 경우, 참가 팀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고지한다.

3조 (의무 요원)

경기장에는 자격을 갖춘 의무 담당자(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단, 간호조무사는 불가)와 들것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4조 (의무석)

경기장에는 의무석을 설치하여 의료장비를 배치하고, 의무 담당자가 부상선수를 돌볼 수 있도록 한다.

5조 (병원 이동)

부상 선수 또는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는 의무 담당자의 확인 후 해당 팀 관계자를 동반하여 후송하여야 한다.

6조 (사전 점검)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들이 심장, 호흡기관 등 신체 건강에 이상 유무, 감염병(코로나19 등)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 유무에 대해 사전에 점검한 후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이러한 사전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피해)가 발생할 경우 팀이 책임을 져야 한다.

7조 (보험)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 부상을 비롯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8조 (부상치료비 보조)

① 경기 중 발생한 부상치료비에 한하여 대한축구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서 보장범위 내 지원한다.

② 부상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신청한 선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세부적인 신청 및 절차는 별도 안내한다.

9조 (안전 대책)

중앙 및 시도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전에 경기장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한다.

②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기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경찰 등 안전 질서 인력을 요청한다.

③ 경기 시 선수단의 이동 동선은 응원단 및 일반 관중과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리그 운영본부의 경기 진행석은 관중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응원단은 경기장내 지정된 구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응원단 간 충돌을 방지한다.

⑥ 관중석이 없는 경기장에서는 별도의 라인을 설치하여 그라운드와 관중석을 구분해야 한다.

⑦ 개막전, 결승전 등 많은 관중의 입장이 예상되는 경기는 사전에 KFA등록증 등 신분 식별이 가능한 물품을 제작, 패용토록 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⑧ 쿨링 브레이크 (워터타임) 제도를 시행한다.

1. 도입배경

하절기 무더위에 따른 온도가 30℃ 전후인 경우, 더위 속에 선수들의 급격한 체력 저하와 부상이 우려되어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수들의 탈수 방지 및 선수들 보호차원에서「쿨링 브레이크」제도 시행

2. 운영방식 :

가. 경기 개시 60분 전 WGBT(체감 온도 지수)가 30℃전후인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단, WGBT가 30℃가 넘지 않았지만 리그운영감독관, 경기담당관, 심판진이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쿨링브레이크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할 수 있다.

나. 리그운영감독관, 경기담당관, 심판이「쿨링 브레이크」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쿨링 브레이크」시행이 결정되었을 경우, 경기 전 양 팀에게 리그운영감독관이 시행을 통보한다.

라. 시행 시간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재량으로 각 한 차례씩 2분 전·후로「쿨링 브레이크」시간을 갖되,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권장 시간	비고
전·후반 각 45분 경기	경기개시 30분 전·후	
전·후반 각 40분 경기	경기개시 25분 전·후	
전·후반 각 35분 경기	경기개시 20분 전·후	
전·후반 각 25분 경기	경기개시 15분 전·후	

마. 모든 선수들은 벤치로 돌아가 수분(물 등) 보충을 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보장 한다.

바. 2분 전·후로 휴식 시간을 갖되,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한다.

⑨ 각 시도조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응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권역리그를 운영한다.

제10조(도핑)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임원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 www.kada-ad.or.kr)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KADA에서 무작위로 지목한 선수는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③ 본 대회 전 또는 기간 중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할 경우, KAD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선수는 치료 목적 사용면책(이하 'TUE')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④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 및 관계자 (감독, 코치, 임원 등 모든 관계자)는 항상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KADA의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⑤ 도핑검사 후 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12장 경기 및 인력 운영 기준

1조 (경기 시설 사전 점검)

경기 전 아래 체크 리스트에 기재된 시설과 물품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구분		의무 사항	권장 사항
각종 서류	초중고축구리그 경기보고서		◎
	초중고축구리그 운영감독관 보고서	◎	
	심판 보고서	◎	
	출전선수 명단	◎	
	선수 교체표	◎	
	리그 참가 신청서	◎	
운동장 시설	경기장 라인	◎	
	코너깃대 및 코너깃발	◎	
	팀 벤치	◎	
	본부석(의자/책상/텐트)		◎
	심판석(의자/책상/텐트)	◎	
	스코어 보드(팀명, 점수판)	◎	
	의료인력 대기석	◎	
	선수 대기실		◎
	심판 대기실	◎	
	골대 / 골망	◎	
	팀 연습장(워밍업 공간)		◎
일반 시설	음향시설		◎
	안전통제실		◎
	화장실	◎	
	주차시설	◎	
물품	볼	◎	
	펌프	◎	
	들것	◎	
	교체판	◎	
	스태프 조끼	◎	
	음료(물/얼음)		◎
	리그 현수막	◎	
	벤치 팀명 부착물		◎
	각종 대기실 부착물		◎
	구급차	◎	
	구급 물품(의료백)	◎	
운영 인력	경기운영 보조요원		◎
	장내 아나운서		◎
	안전 담당	◎	
	시설 담당	◎	
	의료 인력	◎	
	볼스텝(기수단)		◎
	들것조	◎	
기타	지정 병원	◎	

2조 (시간대별 경기 준비)

아래와 같은 시간대별 순서로 경기를 준비한다.

시간	내 용	비 고
- 90′	• 리그운영감독관, 운영요원 경기장 도착 • 운동장 시설 점검 및 운영 인력 점검	
- 60′	• 양 팀 선수단 및 심판진 도착 • 출전 선수명단 제출	
- 45′ - 20′	• 양 팀 워밍업	
- 20′	• 그라운드상태, 골대, 골망, 코너깃대, 라인 등 경기장 시설물 최종점검	
- 9′	• 심판 및 선수 입장대기 • 장비 검사	
- 8′	• 개식통고 및 양팀 선수단 소개 • 심판진 소개 • 교체선수 및 팀 임원 벤치 착석 • 기수단 입장 대기	필요시 운영
- 6′	• 페어플레이기, 심판진 및 선수단 입장	필요시 FIFA Anthem 방송
- 5′	• 선수단 격려 • 기념 촬영	필요시 운영
0	• 전반전 경기시작	

3조 (경기 운영 인력)

경기장에 아래와 같이 경기 운영 보조 요원을 배치한다.

① 의무 요원

1. 각 경기장별로 의사 또는 간호사 1명(응급구조사), 구급차 요원 1명을 배치한다.
2. 경기 개시 9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3. 의료용 물품을 지참해야 한다.
4. 대기 심판석 뒤 또는 본부석 내 경기 진행석에 위치하여 활동한다.

② 경기 운영 보조 요원

1. 모든 경기 운영 보조 요원은 경기 시작 9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해야 하며, 업무 종료 후 리그운영감독관 또는 시도 조직위원회 리그 운영본부로 ‘수당 등 수수료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협회 지원금 사용 및 정산지침 ‘수당등 수수료 내역서’ 참고)
2. 리그 운영본부에서 지급한 조끼를 착용한다(들것 요원의 경우, 십자가가 표시된 조끼를 착용).
3. 리그운영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경기장 안에서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4. 들것 요원은 각 경기장별로 최소 2인 1개조로 운영하며, 필요시 리그운영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임무를 병행할 수 있다.
5. 볼 스텝은 최소 1인 이상 배치한다.
6. 점수판 관리 인원을 1명 배치하며, 볼스텝 등 타 임무와 병행할 수 있다.

4조 (아나운서 운용)

① 필요시 경기운영과 관련하여 아나운서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아나운서 운용 시에는 아래의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방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해진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부록 7과 같다.
2. 특히, 경기 중에는 지정된 멘트 외에는 하지 않는다.
3. 경기 개시 전 1회, 하프타임 1회, 총 2회의 경기장 내 금연 및 주변 정리 등의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4. 선수 교체 방송은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한다.

5조 (점수판 운용)

① 팀 및 관중 서비스를 위해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나 경기장 상황에 따라 점수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팀명, 점수, 경기 시간 등을 표출할 수 있다.

6조 (경기 결과의 보고)

① 권역 리그 경기에서 리그운영감독관은 경기 후 즉시 시도조직위원회 리그운영본부로 결과를 보고한다.

② 시도조직위원회 리그운영본부는 경기 종료 후 즉시 경기 스코어를 전산 입력하고, 최소 이틀 뒤에는 경기 상세 결과를 전산 입력한다.

③ 모든 사고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리그운영감독관은 중앙조직위원회 및 시도조직위원회 리그운영본부로 즉시 구두 보고 후,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시도조직위원회 리그운영본부는 각종 보고서(초중고 축구리그 운영감독관 보고서, 초중고축구리그 경기보고서, 심판보고서) 원본을 시도협회에서 보관 및 관리하며, 주요 경기정보는 KFA 온라인등록시스템(joinkfa.com)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7조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사업의 지원금 사용 및 정산)

「시도협회 지원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다.

13장 마케팅 및 홍보

1조 (권리의 주체)

① 본 리그와 관련하여 일체의 상업적 권리는 대한축구협회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대한축구협회와 그 상업권자(리그 공식후원사, 공식공급업체),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허가한 권리권자만이 상업적 권리를 행사한다.

② 시도축구협회 및 참가선수단은 대한축구협회의 상업적 권리 사용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도축구협회, 참가선수단 및 그 상업권자(시도축구협회 또는 참가선수단과 별도의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여, 동의 또는 승인을 득한 자)를 포함하여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여하한 제3자가 본 규정에 위배하여 대한축구협회 및 그 상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재산상 및 기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조 (경기장)

① 대한축구협회 및 그 상업권자는 본 리그와 관련하여, 해당 경기장 상업적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경기장 주변 광장 또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부대시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도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및 그 상업권자에 의한 경기장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하여 그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세금)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며,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의 납부 책임은 시도축구협회에 있다.

3조 (대한축구협회 상업권자 - 대회 공식후원사, 공식공급업체)

① 대한축구협회는 본 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리그명칭후원사(타이틀 스폰서)를 포함한 리그 공식 후원사, 리그 공식용품, 리그 공식구, 음료 공급업체를 포함한 리그 공식공급업체를 모집한다. 업종별 모집범위 제한은 없으며, 대한축구협회 상업권자는 1업종 1사를 기준으로 업종별 독점성을 가진다.

② 대한축구협회 상업권자는 본 리그를 이용하여, 기업 이미지 및 기업 제품을 광고, 홍보 또는 판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도축구협회 및 참가선수단은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의 상업권자의 광고, 홍보 및 판촉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③ 리그 공식공급업체는 본 리그에 소요되는 제품/용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및 리그 공식공급업체가 지정 제품/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시도축구협회 및 본 리그 참가선수단은 반드시 해당 제품/용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고, 임의로 기타제품/용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시도 축구협회, 참가선수단 및 그 상업권자가 본 리그와 관련한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 진행할 수 있다. 단, 대한축구협회 상업권자와 업종을 중복하여 상업적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상업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시도축구협회 및 참가선수단은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재산상 및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4조 (광고물 - A보드, 현수막 배너, 인터뷰 백드롭 등)

① 경기장에는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상업권자, 대한축구협회가 허가한 권리권자의 A-보드, 현수막 배너, 인터뷰 백드롭 등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A보드: A보드는 리그명칭후원사 보드를 경기장 전면 정중앙으로 하여 대한축구협회가 지정한 위치에 리그 공식후원사, 리그 공식공급업체 등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상업권자 보드를 설치하며, 기타 대한축구협회가 허가한 권리권자 보드를 설치할 수 있다. A보드 규격은 가로 6M 세로 1M로 하되, 그 규격과 형태를 경기장 조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현수막 배너: 경기장 내, 외부 및 경기장 주변 광장에 설치할 수 있다.
3. 인터뷰 백드롭: 본 리그와 관련되는 일체의 인터뷰 시, 대한축구협회가 지정한 인터뷰 백드롭(배경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도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지정한 위치에 일체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광고물을 제작, 설치, 유지,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허가에 의하여 시도축구협회 및

참가선수단의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 그 비용 부담은 해당 시도축구협회 및 참가팀이 진다.

③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허가에 의하여 시도축구협회 및 참가선수단이 경기장 내, A보드, 광고배너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한축구협회 상업권자와 업종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5조 (프로모션)

대한축구협회는 본 리그와 관련하여 일체의 상업적 프로모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시도축구협회, 참가선수단및 그 상업권자를 포함하여 대한축구협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여하한 제 3자의 상업적 프로모션을 금지한다.

6조 (리그 공식마크)

대회 공식마크는 리그명칭, 리그로고, 상표, 캐릭터, 디자인, 엠블럼을 포함한 본 리그의 표식 일체를 하며, 대한축구협회(이하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상업권자를 포함한다)와 대한축구협회가 허가한 권리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7조 (중계방송, 사진 등)

① 대한축구협회는 본 대회와 관련하여 일체의 중계방송 권리(지상파TV, 케이블TV, 라디오, 위성TV, 지상파/위성 DMB, 인터넷, 모바일 매체를 포함하여 향후 개발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한 중계방송 권리 및 영상 및 오디오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가 지정하는 중계방송사만이 본 리그를 중계 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가 지정하는 중계방송사는 시도축구협회, 참가팀 및 참가선수의 초상, 배번, 성명, 약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리그와 관련하여, 촬영 또는 녹음되는 영상, 사진, 오디오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초상권 포함)은 대한축구협회에 귀속되며, 대한축구협회, 그 상업권자 및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허가받은 권리권자만이 해당 제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축구협회 및 그 상업권자는 본 리그와 관련하여 노출되는 시도축구협회, 참가팀 및 참가선수의 초상, 배번, 성명, 약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8조 (관계자 및 임원 KFA등록증, 입장권)

① 대한축구협회는 필요한 경우, 본 리그의 KFA등록증을 발행하여 경기장 출입여부 및 출입구역을 통제할 수 있다.

② KFA등록증의 종류는 별도로 정하며, 시도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가 발행한 KFA 등록증 정책에 따라 KFA등록증 소지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한축구협회는 필요한 경우 본 리그 관람을 유료화할 수 있으며, 요금 체계 등 입장권 정책을 별도로 하여 시도축구협회, 참가팀, 참가선수, 리그 팬 등에 공표하도록 한다.

9조 (홍보)

① 중앙조직위원회는 리그 기간 중 전용 신문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중앙조직위원회는 경기 일정, 리그 참가 선수단 소개 등의 홍보 자료가 수록된 리그 공식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단, 중앙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권역리그 팜플렛의 제작을 시도협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시도협회는 중앙 조직위원회가 정한 별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중앙조직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fa.or.kr) 내에 리그 전용 코너를 제작한다.

④ 중앙 및 시도조직위원회는 경기 중계방송 및 광범위한 언론 뉴스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⑤ 시도조직위원회는 중앙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홍보용 자료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음 개정판이 발간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조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록

부록 1 리그 라이선스 제도 안내

1. 목적

본 안내는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참가를 희망하는 전문축구 신생팀을 대상으로 하며 초중고리그 참가신청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함이다. 기존에 라이선스를 소유한 팀 중 법인 소재지 변경으로 인해 타 권역리그 참가 희망 시에 희망 변경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라이선스 신규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제출서류 종류 및 필요 조건

가. 제출서류 종류

#	서류 종류	급별 제출 서류			비고
		초등	중등	고등	
①	라이선스 신청 공문	O	O	O	
②	신청단체 정보	O	O	O	
③	선수단 선발 및 구성 계획(예비 선수 명단)	O	O	O	
④	팀 소속 지도자 관계 증명서	O	O	O	
⑤	훈련장 시설 현황 및 홈경기장 시설 현황 (운동장 사용계약서 또는 관리단체 발급 사용확인서 첨부)	O	O	O	- 홈경기 신청팀은 홈경기장 시설 현황 필수 제출
⑥	팀 행정 조직 및 홈경기 운영 계획	X	△	O	*홈경기 신청팀은 홈경기 운영 계획 필수 제출
⑦	선수 육성 및 지원 계획서	O	O	O	
⑧	참가신청 서약 및 이행 확인서	O	O	O	
⑨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	O	O	O	※ 클럽팀에 한함 -. 3종류 서류 중 1개 제출 -. 신청 날짜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⑩	리그 혹은 대회 참가 기록	O	X	X	- 신청 연도에 참가한 i리그 (U10이상), KFA 승인 전국 단위 페스티벌 혹은 지역대회 등

나. 제출서류 상세내용

#	서류 종류	충족조건
①	라이선스 신청 공문	법인 대표자의 직인이 포함된 공식문서 제출
②	신청단체 정보	팀, 법인, 홈경기장(해당팀), 훈련장, 팀 지도자, 사무국/행정지원 인력 기본 정보 입력 후 제출
③	선수단 선발 및 구성 계획	선수단 선발 계획 및 예비 선수 명단(초등 최소 10명, 중등 최소 16명, 고등 최소 18명) 제출 ❖ 라이선스 취득 후, 리그참가 당해 연도 등록기간에 정식 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함
④	팀 소속 지도자 관계 증명서	대한축구협회가 발급한 지도자(감독) 자격증 사본 제출(앞, 뒷면) - 초등: AFC C급 / KFA 3급 (최소 자격조건) - 중등: AFC B급 / KFA 2급 (최소 자격조건) - 고등: AFC B급 / KFA 2급 (최소 자격조건)
⑤	훈련장 시설 현황 홈경기장 시설 현황 (운동장사용계약서 또는 관리단체 발급 시설 사용확인서)	리그 참가년도 운동장 사용계약서(1년 이상) 또는 관리단체 발급 시설 사용 확인서 제출(사용 허가 증명이 가능한 별도의 문서 대체 가능) 훈련구장의 주소지, 규격, 사용 기간 (요일, 시간) 및 횟수가 명시된 사용계약서 제출 (실내구장 가능하나 인조잔디 혹은 천연잔디만 가능) - U12 : 최소 풋살경기장 정식 규격(38m X 20m) 이상 - U15 : 최소 90m X 45m 이상 - U18 : 권장 105m X 68m 이상(최소 100m X 64m 이상) (계약서 형태의 문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리그 참가 년도 연말까지 해당 운동장의 관리 단체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은 별도의 공문서로 대체 가능) 예) 시설관리공단 직인이 날인된 운동장 사용허가 공문 ❖ 운동장사용계약서에 명시된 운동장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주소는 반드시 같은 광역단체에 속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심사에 따라 1시간 이내의 지역 훈련장에 특별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초등: 주 2회 이상, 중고등: 주 3회 이상 *수도권의 운동장 사용 포화 상태 및 월단위 대관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시도협회가 특별 승인을 요청하는 팀에 한해서 대한축구협회 검토 후 연간 훈련장 사용 계약서/확인서 없이 한시적으로 특별승인 할 수 있다.
⑥	홈경기 인력 및 경기운영 계획	홈경기 인력 운용 계획 및 홈경기 운영 계획 제출
⑦	선수 육성 및 지원 계획서	선수단 대상 선수육성(훈련/교육) 계획 및 선수단 지원 계획 제출
⑧	참가신청 서약 및 이행 확인서	참가 신청 서약 및 이행 확인서(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후 제출
⑨	법인 정관	해당 법인 정관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법인형태 :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공기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형태 모두 인정 ❖ 법인 번호에 의한 법인 인정 기준 : 예시) xxx-00-xxxxx ⇒ 두 번째 자리 00의 번호는 '81~88'인 경우에만 적합한 법인으로 인정 ❖ 법인 성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스포츠(체육) 또는 축구와 무관한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된 법인은 승인 불가 ❖ 개인사업자(체육지도자) 불인정 ❖ 팀은 법인등록 소재지의 시도축구협회에 리그참가신청을 원칙으로 함
⑩	리그 혹은 대회 참가 기록	신청 연도에 참가한 i리그 (U10 이상), KFA 승인 전국단위 대회·페스티벌, KFA 승인 지역대회 중1개 이상의 참가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리그/대회 참가 간 몰수패, 실격 및 징계사항은 심사 시 반영함 별도 참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출전 기록 혹은 참가 증명 공문 등으로 대체 가능함

다. 세부 기준

#	구분 및 설명	세부 카테고리	세부 내용	비고
1	<스포츠 기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팀 운영에 기본이 되는 선수 보유(등록) 및 선수지원시스템에 대한 기준	선수 보유 (등록/참가신청)	○ 초등 10명, 중등 16명, 고등 18명 이상의 선수 보유(등록 및 참가신청) : 선수단 구성 및 선수 선발 계획 제출	제출서류 #3 - 선수단 구성/선발계획
		지도자 구성	○ 각 급별 기준에 맞는 자격 보유 지도자 최소 1인 가. 초등부 : AFC C급 이상(최소자격) 나. 중등부 : AFC B급 이상(최소자격) 다. 고등부 : AFC B급 이상(최소자격)	제출서류 #4 - 팀 소속 지도자 관계 자증명서
		선수 육성 프로그램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선수 육성 계획' 가. 클럽 운영의 목적과 철학 나. 팀 관리자 운영 계획(지도자, 피지컬, 분석, 의료 담당자 등) 다. 축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출서류 #7 선수 육성 지원 계획서
		선수지원 프로그램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선수 지원 계획' 가. 선수 대상(학과중심) 교육/지원프로그램 나. 선수 대상 장학제도 등 지원 제도 다. 선수들에 대한 의료지원(부상자 관리 등)	
2	<시설 기준> 선수들의 훈련 및 홈경기 운영을 위한 경기장 및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	훈련장 기준	○ 훈련장을 1개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유 가. 리그 참가연도 사용계약서 또는 확인서 나. 시설현황자료(사진 자료 포함) 다.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 경기장 원칙 (협회에서 인증한 인조잔디 혹은 천연잔디 권장)	제출서류 #5 훈련장 시설 현황 및 홈경기장 시설 현황
		홈경기장 기준	○ 홈경기 진행을 위한 '홈경기장 시설 현황자료(사진 자료 포함)' 제출 ○ 홈경기 개최를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홈경기장을 보유 또는 사용권한을 보유해야 함 가. 홈경기 일정에 따른 홈경기장 활용 권리 보유(사용계약서 또는 확인서) 나. 경기장 규격 105m X 68m 이상 권장 (최소 100m X 64m 까지 허용) 다. 협회에서 승인한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 경기장 권장 라. 홈경기 진행을 위한 팀대기실(2실), 심판 대기실(1실) 보유(간이시설/천막 대체 가능) 마. 야간 경기 개최를 위해서는 800lux 이상의 조명시설 보유 600lux	
		숙소 운영	○ 클럽하우스(합숙소) 운영 시 현황자료 제출 : 위치 및 시설현황, 안전계획 등	제출서류 #7 선수 육성 지원 계획서

3	<인사 및 행정 기준> 팀운영과 홈경기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적구성에 대한 기준	팀 행정 지원 조직 구성	○ 팀행정(팀매니저) : 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할 총괄 책임자 1인 ○ 경기운영 : 홈경기 운영 및 진행에 대한 책임자 1인	제출서류 #6 팀 행정 조직 및 홈경기 운영 계획
		홈경기 운영 조직 구성	○ 경기운영(필수) : 홈경기 운영과 진행에 필요한 인력(볼스태프, 들것조 등) ○ 안전(필수) : 홈경기 선수단 및 심판진 등의 안전 담당자 ○ 홍보(선택) : 경기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	
4	<법적 기준> 리그 참가를 위한 독립 법인 형태의 클럽운영과 관련한 기준	법인사업자 등록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제출(학교법인 제외) 가. 학교팀 : 학교 법인 나. 클럽팀 :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 ○ 법인 성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스포츠(체육) 또는 축구와 무관한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된 법인은 승인 불가 가. 법인 번호(xxx-'00'-xxxxxx) 두 번째 자리 '00'의 번호는 '81~89'인 경우에만 적합한 법인으로 인정 ○ 팀은 법인등록 소재지의 시도축구협회에 리그참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제출서류 #9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
		법인 정관	○ 해당 법인의 정관 사본 제출	

3. 리그 라이선스 신청 유형 및 승인 단계

유형	신청 방법		소속 시도FA		KFA 심사
신규팀	joinkfa 온라인 신청	☞	1차 심사 실시 (승인 또는 반려)	☞	2차 심사 실시 (승인 또는 반려)
기존팀 (전문/동호인)	시도협회 메일/서면 서류 제출				
협회가 지정한 기간			협회가 지정한 기간		협회가 지정한 기간

※ 신규팀: 라이선스 신청일 기준으로 KFA 등록되지 않은, 창단이 필요한 팀

※ 1차 ~ 2차 심사 단계에서 반려 처리 시, 해당 팀은 초기 단계부터 재신청

가. 리그 라이선스 취득 후, 발급된 ID로 팀명 참가신청 및 리그 참가비 납부 (기간 별도 안내)

나. 라이선스 승인 후 차년도 정기 등록기간 (매년 1~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 내 팀 등록 및 선수 등록 절차 수행

다. 기타 팀 정보(임원, 유니폼 색상, 배번 등) 입력 및 참가신청 관련 절차 수행

라. 시도협회는 1차 심사 간에 동일팀으로 추정되는 별도 법인 팀의 숙소, 훈련장, 주소, 식당, 선수 및 지도자 선발 등 종합 요소를 판단하여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및 시도협회는 해당 팀의 라이선스 승인 후에라도 동일팀으로 추정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마. 제출 서류 내 허위사항 발각 시 반려 혹은 라이선스 박탈 후 별도 제재 가능

4. 기타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팀의 형태
및
적용범위</td><td>○ 모든 참가팀은 법인 형태에 한하여 참가 가능
a) 학교팀 - 학교 법인
b) 클럽팀 -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팀은 법인등록 소재의 시도축구협회에 팀 및 선수등록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신청하는 클럽명이 법인명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클럽명이 명기되고, 법인이 해당 클럽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만 승인이 가능함
❖ 참가신청 완료 후 어떠한 사유라도 해당 법인 해산 시, 해당 법인으로 참가하는 모든 팀은 참가자격을 상실함</td></tr>
<tr><td>리그
참가신청</td><td>○ 초등 10명이상, 중등 16명 이상, 고등 18명 이상 참가 신청(등록규정과 동일 적용)
○ 지도자 및 임원의 중복 참가 제한 : 리그규정 5장 7조 ④항
❖ 지도자는 각기 다른 두 개 팀에 지도자 또는 임원(팀부단장, 팀부장, 주무, 의무, 트레이너 등)으로 중복 참가 불가 함(단, 초등리그의 분할팀으로 2개팀이 참가할 경우 예외 적용)</td></tr>
<tr><td>동일법인의
참가신청</td><td>
<table>
<tr><th>구분</th><th>리그 참가</th><th>비고</th></tr>
<tr><td>초등
(U12)</td><td>2팀
(8인제)</td><td>11인제 → 8인제 정책 변경에 따라 1개 등록팀이 2개 팀으로 분할하여 <u>초등부 리그 참가</u> 가능
ex)
<table>
<tr><th>팀 등록</th><th>FC 신문로</th></tr>
<tr><td>리그
참가</td><td>↙ ↘
FC 신문로 A | FC 신문로 B</td></tr>
</table></td></tr>
<tr><td>중등
(U15)</td><td>1팀</td><td></td></tr>
<tr><td>고등
(U18)</td><td>1팀</td><td></td></tr>
</table>
① 1개의 권역만 있는 지역의 초등부 분할팀(2개팀)의 경우, 협회 판단에 의해 동일 권역 편성이 가능하다.
❖ 참가팀의 공정한 기회부여 및 권역리그 운영 상의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시도협회의 판단에 따라 초등리그 분할팀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② 법인정관 또는 운영관련 규정에 해당 연령대 팀 운영에 대한 사항(법인 보유 급별 팀 현황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③ 동일법인 중복 팀 운영 제한
-. 1개의 법인은 초,중,고 각 급별로 한 개씩의 팀만을 운영할 수 있다(단, 초등부 분할참가팀은 한 개의 팀으로 간주한다).
-. 기존 중복팀 보유 법인은 신규팀들과 동일하게 각급별로 한 개씩의 팀만 운영가능하다.
(2021년도 유예기간, 2024년도부터 시행)
예) ‘ㅁㅁ주식회사’ 법인이 ‘FCㅁㅁU15’와 ‘FCㅇㅇU15’ 2개 팀 운영 시
⇒ 옵션1 : 두 팀을 한 개의 팀으로 합병
⇒ 옵션2 :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각의 팀을 별도로 운영되도록 조치</td></tr>
</table>

홈 경기장 및 훈련장 확보	**○ 운동장사용계약서에 명시된 운동장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 명시된 주소는 반드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야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협회의 별도 심사에 따라 팀 소재지에서 1시간 이내의 타(광역시도) 지역 훈련장을 특별 승인 받을 수 있음** **○ 훈련구장 확보 : 리그 참가년도 운동장 사용계약서(1년 이상) 또는 관리단체 발급 시설 사용 확인서 제출(사용 허가 증명이 가능한 별도의 문서 대체 가능)** **- U12 : 최소 풋살경기장 정식 규격(38m X 20m) 이상** **- U15 : 최소 90m X 45m 이상** **- U18 : 권장 105m X 68m 이상(최소 100m X 64m 이상)** **❖ U15팀 중 홈경기를 희망하는 팀은 U18 정규규격 경기장 확보**
기타사항	**○ 리그 라이선스 취득 후 팀의 사정에 따라 리그 불참시(참가년도) 해당 라이선스는 무효되며 해당 팀은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전년도 리그에 실격 등 결격 사유 없이 일정을 마친 경우에 차년도 리그 라이선스는 자동 유지된다.**

부록 2 홈경기 개최팀 시설 및 인력 운영 기준

1. 경기장
   1) 경기장은 IFAB 경기 규칙에 준하여 중앙 조직위원회가 승인한 경기장을 사용한다.
   2) 골 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은 같아야 하며, 12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골대는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식 골대는 리그 운영본부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4) 팀 벤치 앞의 기술지역(테크니컬 에어리어)은 터치 라인에서 1m, 중앙선에서 양쪽으로 8m 떨어진 지점에 평행하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경기장 그라운드 내에는 경기를 위한 시설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며, 그라운드 밖에 설치된 시설도 선수들이 다칠 위험이 없어야 한다.
   6) 구급차를 포함한 응급차량은 지정된 위치에 대기하여야 하며, 팀에서는 응급차량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선수 대기실
   1)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라커룸) 운영을 권장한다.
   2) 선수 대기실은 천막(텐트)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설치할 때 지면에 고정해야 한다.
   3) 각 선수 대기실에는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4) 천막으로 대기실을 대체할 때 본부석 부근에 설치하되, 경기장 터치라인으로부터 최소 3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선수 대기실은 일반 관중 및 외부인의 출입으로부터 통제되어야 한다.

3. 심판 대기실
   1) 경기장에는 심판 대기실이 있어야 한다(학교시설 및 천막 등으로 대체 가능).
   2) 심판 대기실은 팀 관계자 및 관중의 출입으로부터 통제되어야 하고, 필요시 경찰 또는 안전 담당자를 동원해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4. 대기 심판석
   1) 별도의 대기 심판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기 심판석에는 등받이, 지붕, 투명방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책상 및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팀 벤치
   1) 팀 벤치는 경기장 대기 심판석의 양쪽에 설치한다.
   2) 팀 벤치에는 8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등받이, 지붕, 투명 방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의자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경기 진행석
   1) 경기장 중앙에 경기 진행석(본부석) 설치를 권장한다.

   2) 경기 진행석에는 4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책상 및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7. 편의 시설

경기장 주변에는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8. 주차 공간

선수단, 리그 임원, 진행요원에게 경기장 출입이 가까운 장소를 주차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 시설 준비 사항

경기 전 홈경기 개최팀은 아래 체크 리스트에 기재된 시설과 물품의 준비하여야 한다.

구분		의무사항	권장사항
운동장 시설	경기장 라인	⦿	
	코너깃대 및 코너깃발	⦿	
	팀 벤치	⦿	
	본부석(의자/책상/텐트)		⦿
	심판석(의자/책상/텐트)	⦿	
	스코어 보드(팀명, 점수판)	⦿	
	의료인력 대기석	⦿	
	선수 대기실		⦿
	심판 대기실	⦿	
	골대 / 골망	⦿	
	팀 연습장(워밍업 공간)		⦿
일반 시설	음향시설		⦿
	화장실	⦿	
	주차시설	⦿	
물품	볼	⦿	
	펌프	⦿	
	들것	⦿	
	교체판	⦿	
	스태프 조끼	⦿	
	음료(물/얼음)		⦿
	리그 현수막(내/외부 각 1장)	⦿	
	벤치 팀명 부착물		⦿
	각종 대기실 부착물		⦿
	구급차	⦿	
	구급 물품(의료백)	⦿	
인력	진행요원(볼스텝, 점수판 관리 등)		⦿
	들것조	⦿	

부록 3 유형별 긴급제재 기준표

유형	내용	대상 및 긴급제재 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팀
1. 경기중 일반적 위반행위	심판에 의한 경고 및 퇴장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		
2.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	1. 폭력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승점감점
	2. 폭언, 모욕 및 위협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3.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 행위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4. 경기장 무단 난입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5.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2~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6. 응원단의 난동 행위 유발 등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 방관한 행위	※ 출전정지 2~4경기	※ 출전정지 2~4경기	
	7. 건전한 응원풍토 위반(응원단의 난동, 심판에 대한 항의 등)	-	※ 경고~출전정지 4경기	
	8. 경기중단 또는 경기지연 행위	※ 출전정지 1~ 4경기	※ 출전정지 1~ 4경기	
	9. 경기 포기 또는 불참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 ~ 출전정지 4경기	
	10. 경기조작 (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1. 심판매수 (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 금지약물(도핑)행위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3. 명예 실추 행위	12. 명예실추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경고~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4. 직권남용 행위, 무고 또는 위증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②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무고하는 행위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5. 금전비리행위 등	① 배임, 횡령, 절도 ② 향응 및 뇌물수수행위 ③ 불법 스카우트 및 거래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6.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13.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 경고~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14. 경미한 불미행위	※ 경고~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15. 이적선수가 활동시기를 위반하여 출전한 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6. 징계중인 선수의 경기출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7.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착석 및 지도행위	-	※ 출전정지 4경기	
	18. 출전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의 출전 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출전정지 4경기	
	19. 비 등록 선수의 경기 출전	-	※ 출전정지 4경기	
	20. 수업 무단 불참 또는 수업 시간 중 훈련 및 경기 참가	-	※ 출전정지 4경기	
	21. 지도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행정, 의무 등)이 벤치에서 지도한 행위	※ 경고~출전정지 4경기	※ 경고~출전정지 4경기	
7. 성폭력, 성추행 등 행위	①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②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8. 인권침해	언어폭력,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제한 등 부당한 제재행위, 선수 지도 중 흡연 또는 음주행위(선수외 대상자에 한정)	협회 징계기준(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른다		
9. 기타	가.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리그공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특히 팀 지도자, 관계자, 학부모 또는 응원단 난동의 경우 '승점 감점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유형별 긴급제재는 우선 조치사항이며, 사안에 따라 공정위원회에서 추가로 형량의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리그 및 대회 등 공정소위원회 유형별 긴급제재 기준 외, 사안에 따라 공정위원회 결정전 까지 출전정지 할 수 있다.			

부록 4 중앙 조직위원회 사무국 활동

1. 역할

1) 리그 운영 규정집 제작
2) 참가팀 접수
3) 권역 배분 및 팀 배정
4) 연간 경기 일정표 수립
5) 리그운영팀장, 리그 운영 감독관, 행정 직원 교육
6) 매주 경기 준비 현황 및 결과 점검
7) 특별 사안 점검 및 개선 요청 사항 통보
8) 시도축구협회 순회 및 애로사항 청취
9) 초중고리그 신문 제작, 발송 및 홈페이지 운영
10) 주요 경기 TV 중계 협조 요청
11) 마케팅 활동 계획 수립 및 지원
12) 시도축구협회 예산 지원 및 정산 관리
13) 정산의 전산 시스템 개발 및 교육
14)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리그공정위원회 활동 지원
15) 정부와의 업무 협조
16) 진학 관련 대학과의 행정, 제도적 업무 협조
17) 정부의 대회 평가단 운영 지원
18) 다음 연도 계획 수립

2. 시즌 전 업무

1) 학원 및 클럽 참가팀 접수 및 확정
2) 연간 일정표 취합 및 확정
3) 경기 장소 확정
4) 리그 운영 규정 제·개정
5) 시도조직위원회 관계자 교육
6) 리그운영감독관 양성 및 교육 지원
7) 중앙 조직위원회의 개최
8) 예산의 편성, 집행 계획 수립

3. 시즌 중 업무

1) 시도축구협회 활동 지원
2) 매 라운드 경기 결과 평가 및 정산 관리
3) 권역리그별 경기 결과 전산 입력 확인
4) 시도축구협회 및 권역리그별 순회
5) 리그 평가지원단 운영 지원
6) 시도별 지도자 간담회 개최
7) 왕중왕전 개최 준비
8) 리그 행정가 해외연수 준비

※ 시즌 중 주간 업무

구분	리그 운영부
월	○ 지난 주 경기 결과 종합 ○ 이번 주 경기 계획 점검 ○ 전산 입력 결과 점검
화	○ 리그 평가 회의 및 결과 통보
수	○ 경기장 확보, 리그운영감독관 배정, 심판 배정 등 경기 준비 현황 종합 점검 ○ 수요일에 경기 있을 시 - 순회 파견
목	○ 장거리 원정 숙식비 보조 대상 학교 확인 ○ 리그공정위원회 회의 및 결과 통보 ○ 평가지원단 파견 계획 수립
금	○ 주말 리그 준비 현황 최종 점검
토	○ 상황반 운영 및 순회 파견
일	○ 상황반 운영 및 순회 파견

4. 시즌 후 업무

1) 리그 결과 보고 및 평가 회의 개최
2) 리그 결과 보고서 제작 및 배포
3) 차년도 리그 참가팀 접수
4) 권역 구분 및 팀 편성 준비
5) 리그 행정가 연수 준비 및 실시
6) 최종 정산

부록 5 시도 조직위원회 리그운영팀 활동

1. 리그운영팀의 역할

1) 리그운영

- 리그 운영을 위한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한다.
- 리그 결과의 전산 입력(개인 기록 및 팀 기록 포함) 및 관리를 담당한다.
- 경기, 심판 등 각 위원회 결정 사항을 중앙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 경기 진행요원(기록원, 볼스탭 등), 구급차, 의무 담당자를 섭외하고, 사전에 투입 인력에 대한 정보를 리그운영감독관에게 인계한다.
- 매주 1회 이상 리그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경기를 평가하고, 다음 경기의 준비계획을 세운다.
- 연간 사용할 경기장을 확보하며, 경기 일정을 변경할 경우 대체할 경기장을 확보한다.
- 권역별 경기에 대한 출전선수 명단은 대한축구협회 KFA 온라인정보시스템(www.joinkfa.com)으로 접속하여 출력 후 해당 경기장에 배정되는 리그운영감독관에게 전달한다.
- 해당 권역의 매 경기에 대한 득점, 경고, 퇴장 등 경기별 정보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 각 급별 권역리그 개막전 및 시상식 행사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해당 시도 축구협회, 지자체,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리그 운영 과정에서 사고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중앙조직위원회로 즉시 보고한다.

2) 시설 및 지원

-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고 물품을 준비한다.

3) 마케팅 및 홍보

- 시도조직위원회 재정 확대 사업과 마케팅 권리 보호를 담당한다.
- 권역리그의 홍보, 팀 창단 지원 및 지역 내 팀의 리그 참가 유도 등을 담당한다.

4) 회계 정산팀

- 권역 리그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한다.
- 예산 집행 후 매달 정산하여 그 결과를 중앙조직위원회에 정산하여 보고한다.

5) 홈경기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 홈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서 운영 보조요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그운영 감독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 확인증을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통해 관리한다.

2. 리그운영팀 주간 업무 일정

구분	주간 업무
월	○ 리그평가회의 개최 및 중앙 조직위원회에 결과 보고 ○ 경고, 퇴장, 득점 등 참가팀 선수 및 지도자 개인기록 별도 정리(전담직원) ○ 이번주 경기 준비 계획 수립, 특이 사항(의전, 행사 등) 중앙 조직위원회에 보고
화	○ 1차) 예산 집행 및 정산 ○ 지난주 경기 결과 전산 입력 완료 ○ 심판 및 리그운영감독관 배정
수	○ 경기장 확보, 리그운영감독관 배정, 심판 배정 등 이번 주 경기 준비 현황 종합 점검 ○ 수요일에 경기 있을 시 : 순회 파견
목	○ 2차) 예산 집행 및 정산 ○ 주말 경기 준비 사항 점검(운동장, 팀, 시설 등)
금	○ 주말 경기 준비 사항 최종 점검 ○ 다음경기 출전정지 선수 및 지도자를 확인하여 해당팀에 통보(전담직원)
토/일	○ 경기 상황반 운영 및 경기장 순회 파견, 사고발생시 중앙 조직위원회에 즉시 보고

부록 6 리그운영감독관 활동

1. 자격

대한축구협회가 리그 개시 전 실시한 리그운영감독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승인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리그운영감독관의 자격은 중앙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리그운영감독관 배정 권한

리그운영감독관에 대한 배정권한은 시도조직위원회가 갖는다.

3. 경기 전 임무

1) 경기 개시 9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경기장 시설물 설치 및 점검 실시
2) 동원인력(운영인력, 의무요원, 구급차 등)의 도착 여부 확인 및 임무 부여
3) 경기 전 양팀 지도자의 참가 신청 여부 및 자격증 패용 여부 확인
4) 출전선수 명단 확인
▶ 시도조직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해당 경기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출전 자격(징계, 경고누적, 퇴장, 연령초과, 이적 기간, 참가신청 일자, 기타 각종 출전 기간 경과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선발출전선수 및 교체선수)의 KFA등록증을 확인
▶ 선수들 중 KFA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 출전 불가
5)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한다.
6) 규정 위반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기의 개시 여부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시도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경기 중 및 경기 후 임무

1) 리그운영감독관 보고서와 경기보고서를 작성한다.
2) 경기 종료 후 해당 경기에 대한 득점, 경고, 퇴장, 교체 현황 등을 심판보고서와 대조하여 최종 확인 후 리그운영감독관 보고서와 경기보고서를 시도조직위원회에 제출한다(경기 다음날까지 전달).
3)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기의 재개 여부의 결정 및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시도조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4)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유선으로 시도조직위원회로 보고하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현장 상황을 자세히 기재한 사고(상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5) 경기 종료 후 경기 운영보조요원을 활용하여 경기장 및 주변 정리를 실시한다.

5. 유의 사항

1)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않으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에 기재한다.
2) 경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권한을 가질 수 없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하프타임에 심판에게 충고하지 않는다.

6. 심판의 평가 세부 항목

평가 기준		전반적인 수행 능력			
		나쁨	보통	좋은	아주좋음
경기의 난이도	상	7.5 ~ 7.9	8.0 ~ 8.4	8.5 ~ 8.9	9.0 ~ 10
	중	7.0 ~ 7.4	7.5 ~ 7.9	8.0 ~ 8.4	8.5 ~ 8.9
	하	6.0 ~ 6.9	7.0 ~ 7.4	7.5 ~ 7.9	8.0 ~ 8.4

주심의 평가 내용	
경기 컨트롤	① 규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올바른 규칙 적용과 판정의 정확성 ② 반칙 판정의 정확성 여부 ③ 경고, 퇴장의 정확성과 즉각적인 조치 여부 ④ 어드벤티지 등 모든 상황의 적용 여부 ⑤ 페널티킥에 대한 정확한 판정 여부 ⑥ 규정된 거리 통제에 대한 정확성과 적용
팀워크	① 의도적 시간지연, 항의 선수 조치 여부 ② 추가 시간의 정확한 적용 ③ 지도자의 항의 시, 적절한 조치 여부 ④ 부심과 대기심과의 협조 여부
체력 및 위치선정	① 체력에 대한 준비 여부 ② 필요한 스피드로 플레이에 접근 여부 ③ 프리킥, 코너킥, 골킥 시 주심의 위치 ④ 경기를 예측하고 대각선 식 심판법 응용 여부 ⑤ 전속력으로 상황 발생 지점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

부심의 평가 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오프사이드 판정	① 오프사이드 판정의 정확성 ② 오프사이드 판정 시의 위치선정 및 자세 ③ 오프사이드 판정의 타이밍
위치와 움직임	① 경기 중 전체적인 움직임 ②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골라인, 터치라인을 향한 질주 ③ 코너킥, 스로인, 골킥, 프리킥 상황 시 위치
주심과의 협력	① 주심이 보지 못한 반칙에 대한 촉구 ② 스로인, 골킥, 코너킥의 정확성 및 주심과의 일치 여부 ③ 프리킥, 코너킥, 골킥 시 주심의 위치

대기심의 평가 내용
기술 지역의 관리
주/부심과의 협력

부록 7 리그 경기 진행 가이드

시설 및 인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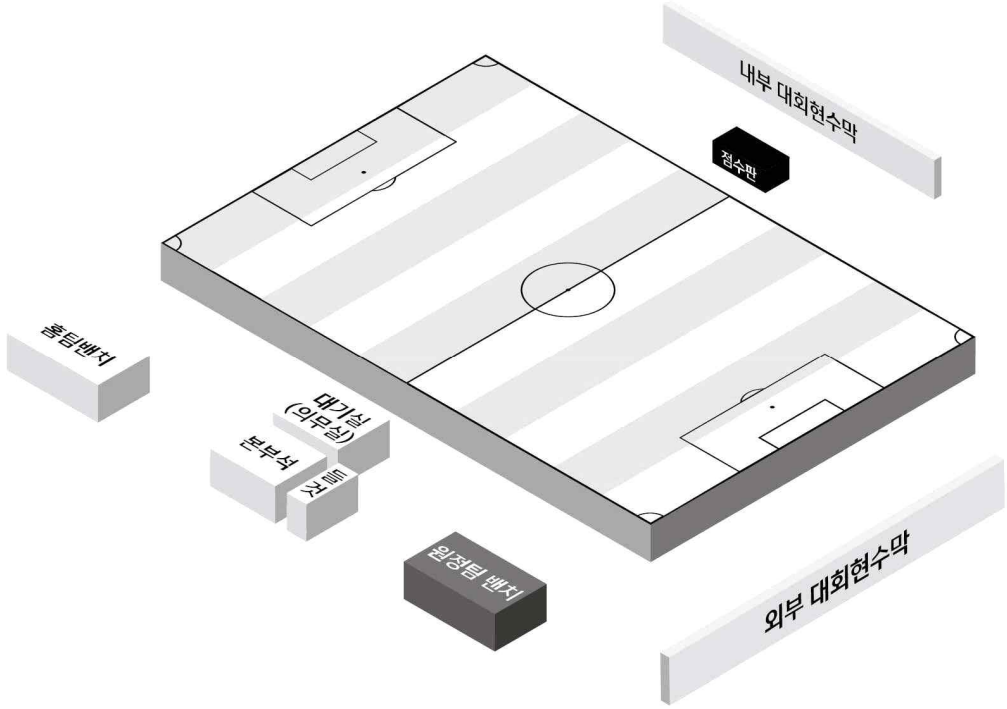

입장식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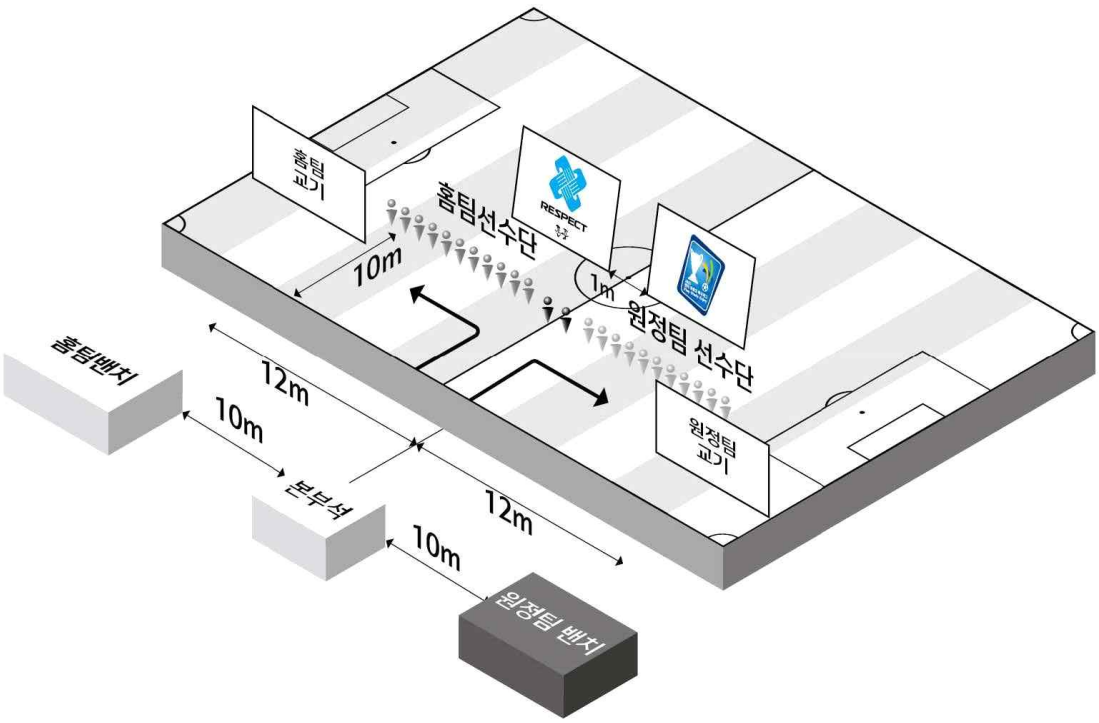

경기 진행 아나운서 시나리오(표준형)

순서(1/2)	시간	내용
개식통보	-10’	이곳 경기장을 찾아주신 축구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홈팀명)팀 대 (원정팀명)팀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원정팀 소개	-9’	경기시작에 앞서 양 팀의 출전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정팀)팀의 출전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수 소개가 끝난 뒤) (원정팀)팀 감독은 감독입니다.
홈팀 소개	-8’	이어서 (홈팀)팀의 출전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수 소개가 끝난 뒤) (홈팀)팀 감독은 감독입니다.
심판진 소개	-7’	다음은 본 경기의 심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심 , 1부심 , 2부심 , 대기심 ,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수단 및 심판진 입장	-6’	다음은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경기를 빛내줄 선수단 및 심판진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수단 입장과 동시에 FIFA Anthem 연주) → 페어플레이기 및 대회기 경기장내로 진입한다. → 페어플레이기, 대회기를 따라 심판진 및 선수 입장 → 선수들과 심판들이 본부석 앞 지정된 위치에 정렬이 완료될 때, FIFA Anthem 연주를 서서히 끝낸다.
선수단 격려	-5’	다음은 선수단 격려가 있겠습니다. 선수단 격려는 소속 (팀) 이름 직책 (팀) 이상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교가 연주	-3’	다음은 (원정팀)의 교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내빈과 관중께서는 교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팀 교가 연주가 끝난 후) 이어서 (홈팀)의 교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순서(2/2)	시간	내용
기념 촬영	-1’	(기념 사진촬영 전 입장기 모두 퇴장) 다음은 기념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경기시작	0’	곧이어 전반전이 시작 되겠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줄 양 팀 선수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종료후	+45’ (+40’) (+25’)	(승부가 나고 있는 경우) 이곳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팀 대 팀의 경기는 팀이 대 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전반전 무승부의 경우) 이곳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팀 대 팀의 경기는 대 무승부로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후반종료후		이곳 경기장에서 열린 팀 대 팀의 경기는 팀이 대 으로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양 팀 선수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경기 안내		잠시 관중여러분께 다음 경기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월 일 시부터 경기장에서 00리그 라운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대진 및 경기일정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득점 멘트		팀의 번 선수가 팀의 번째 골을 성공 시켰습니다.
자책골 멘트		팀의 자책골이 있었습니다.
선수 교체 멘트		(선수 교체 실시 이후에 방송) 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번 선수가 나오고, 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부록 8 **주요 연락처**

대회운영팀

부서		성명	연락처(유선)	공문서 접수 (이메일)
대회운영팀	총괄	김종윤 팀장	02-2002-0745	kfaletter@kfa.or.kr
	고등리그	김명준매니저 전병수매니저 양승빈매니저	02-2002-0804 02-2002-0642 02-2002-0633	
	중등리그			
	초등리그			
	리그운영비 집행	안정화매니저	02-2002-0874	
	전국대회	(고)김지숙매니저 (중)최성익매니저 (초)장용준매니저	02-2002-0742 02-2002-0737 02-2002-0835	
등록팀	국제 업무	손운용매니저	02-2002-0784	kfaletter@kfa.or.kr kfa_regis@hanmail.net
	국내 업무	박진후매니저	02-2002-0834	
		조영남매니저	02-2002-0783	
		김혜경매니저	02-2002-0772	

부록 9 시도조직위원회 조직현황

▣ 서울FA

리그 운영본부장		김덕희	연락처	02-490-2770~4	FAX	02-490-277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177-15 효창운동장 2층				
주 관 권 역	초 등 부	서울 HAECHI권역 및 저학년리그				
	중 등 부	서울 동부리그, 서울 서부리그, 서울 남부리그, 서울 북부리그				
	고 등 부	서울 동부리그, 서울 서부리그, 서울 남부리그, 서울 북부리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리그운영본부장 전무이사	김덕희	02-490-2770	리그운영총괄
심판이사	이영철	02-706-4145	심판배정 및 관리 총괄
사무총장	심건보	02-490-2770	사무국 관리 및 총괄
팀장	김정우	02-490-2770~2	초중고리그 운영 및 대회, 등록 업무 총괄
차장	박용범	02-490-2770~2	중등부 리그운영 및 전문체육 대회, 등록 업무
과장	이동규	02-490-2770~2	고등부 리그운영 및 전문체육 대회, 등록 업무
과장	이재록	02-490-2770~2	초등부 리그운영 및 전문체육 대회, 등록 업무 초중고리그 예산 정산 담당
대리	주효진	02-490-2773~4	동호인 대회 및 K5 리그운영, 동호인 등록 업무
대리	정서연	02-490-2770~2	정산 업무 및 회계 총괄
주임	김재연	02-490-2770~2	동호인 대회 및 K6~K7 리그운영, 동호인 등록 업무
사원	임영탄	02-490-2773~4	동호인 대회 운영

▣ 부산FA

리그 운영본부장		김병준	연락처	051-505-8195	FAX	051-505-8809
주 소		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55-32 사직실내체육관 203호				
주 관 권 역	초 등 부	부산권역(갈매기리그, 동백리그), 부산권역 초등저학년리그(A,B,C)				
	중 등 부	부산권역 중등리그(중등A, 중등B) 각리그 종료후 성적으로 스플릿 진행, 부산권역 부산중등 저학년리그(A,B,C)				
	고 등 부	부산/울산권역 고등리그 전반기, 부산/울산권역 고등리그 후반기 A,B 부산/울산권역 저학년리그(A,B)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김병준	051-505-8195	사무국 관리 총괄
경기이사	구본석	051-505-8195	감독관 배정 및 감독관 교육
심판이사	정의석	051-505-8195	심판배정 및 심판 관련 전반적인 업무
사무국장	정승은	051-505-8195	리그 및 대회 기획, 사무업무 총괄
부장	조정모	051-505-8195	초중고리그 운영 및 정산, 선수등록, 경기일정
차장	강영미	051-505-8195	동호인리그 담당, 회계담당
주임	김준현	051-505-8195	동호인리그 담당

▣ 대구FA

리그 운영본부장		이기백	연락처	053-357-0930	FAX	053-354-7177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88 동진빌딩 3층(대구광역시축구협회)				
주관권역	초 등 부	대구초등리그, [저학년]대구초등리그				
	중 등 부	대구중등리그, [저학년]대구중등리그				
	고 등 부	경북/대구 고등리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리그운영본부장)	이기백	053-357-0930	*리그운영 감독관 배정 및 리그 운영 총괄
심판이사	노우찬	053-357-0930	*리그(초중고,동호인,자체대회) 심판배정 *심판보수교육(자체) / 신인심판 강습회 개최
사무국장	황상봉	010-3501-8460	*리그기획 *리그홍보 마케팅
팀장	박서정	053-357-0930	*일반행정 및 정산업무 / 등록업무 *리그인건비
팀장	탁상민	010-3030-8480	*전문축구 리그 *경기 및 인력운영 / 시설지원 *리그운영비(예산,정산,집행,결과) 및 전산
사원	손호석	010-3342-9360	*경기운영요원 구성 *시설지원

▣ 인천FA

리그운영본부장		서영득	연락처	032)884-2007	FAX	032)884-2010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서측 2층				
주 관 권 역	초 등 부	인천 A~B / 저학년 인천 A~B				
	중 등 부	인천 A~B / 인천 스플릿 A~C / 저학년 인천 A~B				
	고 등 부	인천·서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리그운영본부장)	서영득	032)884-2007	리그 운영 총괄
실장	최민광	032)883-1172	정산 및 회계 총괄
대리	김호진	032)884-5537	초중고리그 운영
사원	조민우	032)422-5595	정산 및 회계

▣ 광주FA

리그 운영본부장		양민호 전무이사	연락처	062-361-6941	FAX	062-383-6941
주 소		[62048]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월드컵경기장 2층 (풍암동 423-2)				
주 관 권 역	초 등 부	광주초등리그, 광주초등저학년리그				
	중 등 부	광주중등리그				
	고 등 부	호남권역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리그운영본부장)	양민호	010-3601-7115	리그 총괄 업무
심판이사 (리그심판이사)	유창호	010-2333-0990	리그 심판 배정 및 관리
사무국장	이병권	062)361-6941 (010-8622-3320)	초등리그, 유소년교육 및 심판운영 업무
사무국장	이혁재	062)361-6941 (010-3608-5165)	디비전리그 업무, 대회운영
팀장	유명민	062)361-6941 (010-6775-3798)	시설관리 및 행사, 홍보, 대회운영
대리	이창민	062)361-6941 (010-9078-0464)	초등리그, 유소년교육 및 심판운영 업무
사원	이주환	062)361-6941 (010-6629-2792)	축발금, 디비전리그 업무 및 회계 업무

▣ 대전FA

리그 운영본부장		미정	연락처	042)256-7971~2	FAX	042)222-7971
주 소		대전 중구 대종로 373 부사동 충무체육관 내 대전광역시축구협회				
주 관 권 역	초 등 부	대전 초등 및 저학년리그				
	중 등 부					
	고 등 부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000 (미정)		리그 운영 총괄 및 감독관 배정
심판이사	윤석빈	010-4411-3862	경기 심판원 배정 심판원 교육
실장	권태형	010-7482-5027	리그, 대회 운영 및 기획 재정 확대 사업 및 마케팅 시설 및 지원 의료진 및 경기보조요원 섭외 체육회, 교육청, 코레일, 대전하나시티즌 대응 업무
대리	김태욱	010-8747-9179	사업계획 및 변경 신청 정산 및 결과보고 초등 및 저학년리그 정산
대리	박규한	010-8950-2213	경기 기록 및 보고서 관리 i리그 정산 각종 대회 운영
대리	전석현	010-9940-9717	징계사항 관리 각종 대회 정산 업무(디비전리그 포함) 홈페이지, 이사회, 대의원총회 관리 및 자료 준비
대리	박민지	010-8849-0862	공문서 수신 및 발신 관리 보조사업 시스템 관리

▣ 울산FA

리그 운영본부장		이동진	연락처	010-3588-6561	FAX	052-277-2054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종합운동장 내 울산광역시축구협회				
주 관 권 역	초 등 부	울산권역 초등리그(고,저)				
	중 등 부	울산권역 중등리그(고,저)				
	고 등 부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이동진	010-3588-6561	업무 총괄 초중고리그/K567리그 전문축구대회/동호인대회 지도자양성/심판양성
사무국장	박현근	010-2708-4050	동호인대회운영 및 지원 (K567/지역대회) 협회홍보 동호인축구팀 창단지원 동호인전국대회 해외교류사업
팀장	최종철	010-4596-7272	전문축구대회운영 및 지원 (초중고리그/지역대회) 전문축구팀 창단지원 지도자교육사업 협회예산담당 해외교류사업
과장	최초연	010-9211-7770	동호인대회운영 (K567/I리그) 등록업무 지도자교육사업 협회 일반행정 정산업무
대리	김기훈	010-5830-6212	동호인대회운영 (K567/I리그) 등록업무 심판교육사업 지도자교육사업 협회 일반행정 정산업무

▣ 경기FA

리그 운영본부장		이천흥	연락처	031-252-5265	FAX	031-254-2651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11 서영프라자 5층 경기도축구협회				
주 관 권 역	초 등 부	경기 E-RESPECT				
	중 등 부	경기 M-RESPECT				
	고 등 부	경기 H-RESPECT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이천흥	031-252-5265	리그 운영 총괄
사무총장	김명철	031-252-5265	동호인축구 총괄
사무처장	이준호	031-252-5265	전문축구 총괄
사무국장	김호성	031-252-5265 (내선10번)	초중고리그, 대회 총괄
경영지원실 (실장)	박은재	031-252-5265 (내선7번)	회계 총괄
경영지원실 (팀장)	국승혜	031-252-5265 (내선8번)	초중고리그 회계
경영지원실 (사원)	김한나	031-252-5265 (내선9번)	초중고리그 회계
대회운영실 (실장)	원성희	031-252-5265 (내선5번)	중등리그 관리 및 등록
대회운영실 (팀장)	정주영	031-252-5265 (내선3번)	대회 및 교육, 등록
대회운영실 (대리)	박구산	031-252-5265 (내선2번)	대회 및 교육, 등록
대회운영실 (사원)	김우열	031-252-5265 (내선4번)	고등리그 관리 및 등록
대회운영실 (사원)	송민호	031-252-5265 (내선6번)	초등리그 관리 및 등록
대회운영실 (사원)	나재동	031-252-5265 (내선1번)	K리그 관리 및 등록

▣ 강원FA

리그 운영본부장		이춘섭	연락처	033-648-3808	FAX	033-646-4421
주 소		(2547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 강릉종합운동장내 (정1문-2층)				
주관권역	초 등 부	강원권역 초등리그				
	중 등 부	강원권역 중등리그				
	고 등 부	강원권역 고등리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이춘섭	033-648-3808	초중고리그 운영 총괄
경기이사	김재훈	033-648-3808	리그운영감독관 배정 및 교육
심판이사	고 석	033-648-3808	초중고리그 심판 배정 및 교육
사무국장	김성기	033-648-2808	초중고리그 운영기획 및 진행
부장	이 선	033-648-4808	초중고리그 운영 및 시설관리
차장	전지원	033-648-3808	초중고리그 예산집행 및 정산

▣ 제주FA

리그 운영본부장		조성철	연락처	064-759-2188	FAX	064-759-2189
주 소		제주 제주시 서광로 2길 24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내 126호실				
주 관 권 역	초 등 부	제주초등리그 제주시/서귀포시, 스플릿A/B [저학년] 제주초등리그 제주시/서귀포시, 스플릿A/B				
	중 등 부	제주중등리그, [저학년] 제주중등리그				
	고 등 부	제주고등리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리그운영본부장 (전무이사)	조성철	064-759-2188	리그 개최 계획 수립 및 리그 총괄 업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대회위원장	차근	064-759-2188	전문축구, K6·7 경기감독관 관리 및 운영 총괄
심판위원장	진광일	064-759-2188	전문축구, K6·7 심판 배정 관리 및 운영 총괄
사무국장	신철무	064-759-2188	협회 사무국 업무 총괄 리그 운영 및 각종 민원 관리
팀장	주한나	064-759-2188	초중고리그 운영 및 집행 정산 전문축구 대회 운영 및 관련 업무
대리	고영빈	064-759-2188	일반 행정업무 및 협회 예결산 등의 회계 관리
사원	김용철	064-759-2188	전문축구 관련 업무 각종 사업
사원	현신재	064-759-2188	동호인리그 운영 동호인축구 관련 업무

▣ 전북FA

리그 운영본부장		유종희	연락처	063-250-8360~3	FAX	063-250-8364
주 소		(5489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번지 전북체육회관 504호				
주 관 권 역	초 등 부	전북A권역, 전북B권역, 전북5V5저학년리그				
	중 등 부	전북권역, 저학년리그				
	고 등 부	호남권역, 저학년리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유종희	063-250-8360	협회 및 리그운영 총괄
심판이사	김광석	063-250-8360	심판 배정 및 관리, 교육
사무국장	라진희	063-250-8360	행정지원, 데이터관리, 사무국 운영 총괄
사원	이슬기	063-250-8363	회계정산업무
사원	채호진	063-250-8361	초·중·고 리그 담당, 기금 회계정산업무,
사원	심승훈	063-250-8362	시설관리, 행정지원

▣ 충남FA

리그 운영본부장		미정	연락처	041-562-8242	FAX	041-569-9484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				
주 관 권 역	초 등 부	충남 초등리그				
	중 등 부	충남 중등리그				
	고 등 부	충청권역 고등리그, 충남/충북/대전/세종 고등리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리그운영본부장)	000 (미정)		협회 운영 총괄 및 감독관배정
경기이사	김기덕	041-562-8242	경기장 점검 및 준비 총괄
심판이사	박종아	041-562-8242	심판배정 및 심판교육 총괄
사무국장	이현준	041-562-8242	초중고리그, 대회운영 동호인리그 관련 행정 협회 행정
팀장	성민철	041-562-8242	동호인 리그/ K6 리그
대리	홍창의	041-562-8242	초중고리그,대회운영 및 교육(심판,지도자 등)업무
대리	김동현	041-562-8242	동호인 리그/ K7 리그

▣ 전남FA

리그 운영본부장		김용석	연락처	061-858-7700	FAX	061-858-7701
주 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신정길 4-131				
주 관 권 역	초 등 부	전남 권역, 저학년 리그				
	중 등 부	전남 권역, 저학년 리그				
	고 등 부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리그 운영본부장	김용석	061-858-7700	리그 운영총괄
경기이사	김제성	061-858-7700	리그 운영관 배정
심판이사	노수용	061-858-7700	심판 배정 및 관리 교육
사무국장	김경무	061-858-7700	리그 행정지원
리그 팀장	유명복	061-858-7700	초, 중, 고등부 리그 담당
과장	위성	061-858-7700	전산, 등록, 축발금 회계정산

▣ 경북FA

리그 운영본부장		미정	연락처	054-859-6002	FAX	054-859-7002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운동장길 53(시민운동장 내)				
주 관 권 역	초 등 부	경북초등축구리그 / 후반기 경북초등축구 A,B리그				
	중 등 부	경북중등축구A,B리그 / 저학년 경북중등축구A,B리그				
	고 등 부	전반기 경북,대구 고등축구A,B리그 / 후반기 경북,대구 고등축구A,B리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리그운영본부장)	000 (미정)	054-859-6002	협회 운영 총괄
총무이사	000 (미정)	054-859-6002	재정확대 및 마케팅 관리
경기이사	000 (미정)	054-859-6002	감독관 배정, 교육 및 경기장 점검, 준비 총괄
심판이사	000 (미정)	054-859-6002	심판 교육 ,관리, 배정 총괄
국장	조명식	054-842-6002	사무국 운영 및 각종 대회 업무 지원,홍보마케팅 / 분과위원회 업무
과장	손정호	054-842-6002	각종 대회운영 및 행정 / 예산 및 정산업무 리그 결과입력 및 관리 / 공정위원회 업무
대리	김형우	054-859-6002	동호인리그 관련 행정, 정산업무 / 경기운영(선수등록) 리그예산 및 정산업무 지원 / 리그 결과입력 및 관리
주임	최경수	054-859-6002	협회 일반 행정 정산업무 / 예산 및 정산업무 지원 원정거리 숙박비 관련업무 / 리그 결과입력 및 관리

▣ 경남FA

리그 운영본부장		미정	연락처	055-267-0830	FAX	055-263-8923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97, 창원축구센터 본관 1층				
주 관 권 역	초 등 부	경남초등A리그, 경남초등B리그, 경남초등C리그				
	중 등 부	경남중등리그				
	고 등 부	경남고등리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미정)	000 (미정)	055-267-0830	협회 운영 및 행정 총괄
심판이사	조현재	055-267-0830	심판배정/관리/교육
사무국장	김종석	055-267-0830	사무국 총괄, 동호인 축구
부장	정우진	055-267-0830	초중고 리그 및 대회운영
차장	권윤부	055-267-0830	회계 및 정산 총괄
사원	임순애	055-267-0830	회계 및 정산

▣ 세종FA

리그 운영본부장		강현우	연락처	044-867-1910	FAX	0505-044-1910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 100, kt빌딩 3층				
주 관 권 역	초 등 부	세종권역				
	중 등 부	세종/대전권역				
	고 등 부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전무이사	강현우	044-867-1910	리그운영총괄
심판이사	윤완희	044-867-1910	심판배정 / 관리 / 교육
사무국장	정인호	044-867-1910	사무국 업무총괄 / 등록총괄/ 협회예산 / 스포츠공정위원회 / 이사회,총회
과장	남혜은	044-867-1910	선수등록 / K7리그담당 / 기금정산
대리	박민경	044-867-1910	선수등록 / K5,6리그담당
사원	손진관	044-867-1910	초중고리그담당 / 축구발전지원금정산

▣ 충북FA

리그 운영본부장		박노안	연락처	043-269-1831	FAX	043-269-1833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 청주종합운동장내 충청북도축구협회				
주 관 권 역	초 등 부	[충북권역] 초등축구리그				
	중 등 부	[충북권역] 중등축구리그				
	고 등 부	[충청권역] 고등축구리그				

▣ 조직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직책	성명	연락처	주요 업무
리그운영본부장 (전무이사)	박노안	043-269-1831	협회, 리그운영 총괄
심판이사	최종선	043-269-1831	심판 배정 및 관리 총괄
사무국장	이융희	043-269-1831	사무국 총괄
대리	곽남헌	043-269-1831	회계 및 축구발전지원금 정산
주임	김홍석	043-269-1831	초중고리그 / 전국대회 심판 교육 등록 및 기타 교육

부록 10 기부금 영수증 양식

※ 초중고 리그를 통해 상금을 수령한 팀(왕중왕전 입상팀)은 주최 측에 요청 시 반드시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대한축구협회로 제출하여야 함.

<table>
<tr><th colspan="10">기 부 금 영 수 증</th></tr>
<tr><td colspan="10">1. 기부자</td></tr>
<tr><td>법 인 명</td><td colspan="2">대한축구협회</td><td>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6">102-82-00068</td></tr>
<tr><td>주 소</td><td colspan="9">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td></tr>
<tr><td colspan="10">2. 기부처</td></tr>
<tr><td>법 인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6"></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10">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td></tr>
<tr><td>단 체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6"></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10">4. 기부내용</td></tr>
<tr><td rowspan="2">유형</td><td rowspan="2">코드</td><td rowspan="2">연월일</td><td colspan="3">기부금품</td><td rowspan="2">금 액</td></tr>
<tr><td>품명</td><td>수량</td><td>단가</td></tr>
<tr><td>법정기부금</td><td>10</td><td>24. . .</td><td>축구발전기금</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10">[「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한축구협회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10">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10">※ 작성방법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1,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5, 코드 40),
라. 그 밖의 기부금 (유형 6, 코드 50)
2.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로서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란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라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재하되, 장부가액 또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td></tr>
</table>

부록 13 홈경기 신청 지침 및 신청서 양식

1. 취지

1) 홈경기 개최를 통하여, 동문, 학부모, 지역 축구팬, 재학생 등이 초중고리그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축구 붐 조성

2) 학교축구부에 대한 지역 사회 및 동문 차원의 관심과 지원 기대

3) 이동거리가 많은 지역(광역도)에 소재한 팀의 경우, 경기 이동에 따른 부담 최소화

2. 홈경기 개최 신청 대상

1) 홈경기 운영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가능

3. 내용

1) 홈경기와 관련한 시설 요건과 경기 운영 준비가 된 팀은 대진표 상 홈경기(왼쪽)에 해당하는 경기는 홈경기 개최 권리를 가짐 (시도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승인)

- 홈경기를 신청한 팀은 홈경기 미신청팀을 상대로 홈경기 개최 가능

- 홈경기 미신청팀은 대진표상의 오른쪽(어웨이팀)에 배정

2) 홈경기 신청을 하지 않은 팀은 권역리그를 주관하는 시도협회가 지정한 경기장에서 실시

4. 홈경기 신청 학교의 의무

1) 운동장 확보(사용료 미지급) : 경기시각 최소 40분전부터 이용 가능토록 확보 의무

2) 운동장 규격 확보

구분	최소 규격	권장 규격
중,고등	100×64m	105×68m

※ 경기장이 부족한 권역리그의 경우, 시도조직위원회 및 중앙조직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다.

3) 경기시설 준비

- 시설 : 텐트 2~3동, 본부석, 점수판, 구급차 선수 교체판, 들것 등 협회 기준표 충족

- 인력 : 경기 보조 인력(볼스텝 및 들것요원 등), 간호사, 구급차 등

※ 경기 보조인력은 자원봉사 활용 유도(학생이 자원 봉사할 경우, 시·도축구협회에서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4) 안전관리 의무

- 상대팀 선수단 및 응원단, 심판 및 감독관 등의 경기장 내외부 안전관리 의무

- 심판 폭력사고 발생 시 홈팀 징계조치

5) 협회 지원 : 심판비, 리그운영감독관비만 지급(경기운영 인력 확보 및 시설 준비는 홈팀의 의무)

▪ 별첨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홈경기 신청서 양식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KFA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홈경기 신청서(학교, 클럽)
(중등부, 고등부 用)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의 홈경기 개최를 신청하며, 홈경기 개최 신청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팀명 :
□ 연령 : 중등부( ), 고등부( )
□ 팀 구분 : 학교팀( ), 클럽팀( )
□ 주소 :
□ 홈경기 운영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운동장명 및 소재지			
관리주체 또는 소유단체			
경기장 규격	경기장(라인)		
	여유공간 포함		
워밍업 공간 유무			
준공연도			
지면 상태		천연(사계절), 천연(한국), 인조	
부대시설 보유현황	화장실		
	관람석		
인력동원 계획	안전담당관		
	볼스텝		
	들것조		
	구급인력 (구급차, 응급요원)		

□ 홈경기 지침 준수 지도자 서명 : (서명)

20 년 월 일

학교장(클럽대표) : (인)

※ 상기 기재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각되거나, 홈경기 경기 중 또는 시작 전/후로 경기 운영준비 미흡이나 폭력사태 발생 방조 시에 리그공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음(홈경기 개최 권리 및 리그참가 자격이 박탈 등)